관리 번호	사회재난-24

「육상화물 운송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여수광양항만공사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기관대응수칙

유형:육상화물운송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리번호 : 1
관련 매뉴얼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국토교통부	○「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국토부, 행정안전부, 해수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경찰청

Ⅰ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표준 절차도

Ⅱ 육상화물운송 분야 대응 프로세스

구 분		주의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경계 초기대응 단계	심각 중수본/중대본 운영 단계	수습복구 단계
초기대응부서	상황실	• 관련동향 지속 파악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 "주의" 경보발령 전파(항만공사 내부, 유관기관 등) • 비상수송대책반(반장 재난안전실) 가동 • 자체비상대책본부(본부장 사장) 가동 • 유관기관등 협조체계 가동 • 비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긴급대책 발동 필요성 검토 • 군 컨테이너 차량등 장비·인력 수요현황 파악 및 국토부 제출 • 분야별 비상운영 대책(터미널 여유 장치능력, 연안 컨수송능력, 비상시 운용 가능한 컨차량등) 점검 • 대국민 홍보 활동 시행	• 관련동향 지속 파악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체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사장) 구성·가동 • "경계" 경보발령 전파(항만공사 내부, 유관기관 등) • 군 컨테이너 차량·인력 주요항만 관할 지방청에 투입 •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한 비상 컨테이너차량 관리 • CY 장치능력 확대 조치(공컨테이너 항만 밖 적치장으로 이전) • 대체수송 수단(화물열차, 연안컨테이너선등) 강화 • 선사, 운영사 등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시행	• 관련동향 지속 파악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체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사장) 구성·가동 • "심각" 경보발령 전파(항만공사 내부, 유관기관 등) • 범정부 종합비상대책 시행 • 대체수송수단/인력 투입 및 상황관리 • 항만별 선석 Pooling제 시행(항만 전체부두를 지방청 일괄관리) • 부두간 환적을 위한 비상 컨테이너선 투입 추진 •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운송 전면허용, 비컨테이너선 투입 등 연안운송 확대 •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시행	• 종합 상황평가 및 사후 수습방향 제시 – 운송거부 사태 대응시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복구차원의 홍보활동 전개(대변인 협조) – 거부상황 종료 및 정상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정부의 대처와 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보완,개선사항 등 • 위기경보 발령 해제 및 비상대책본부, 지방비상대책본부,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 해체 • 항만물류시설 현장 확인 및 이탈선사 등 피해발생 파악 • 터미널운영사, 기항선사 등 항만이용자 관리 강화를 통한 항만 신인도 회복 추진
	소관부서	• 초기상황 인지 및 자체분석·관리 • 담당과장·계장·담당자 정위치 • 우선 활용 가능한 임시장치장으로 공컨테이너 배치(필요시) • 필요시 항만YT 차량 부두밖 운행 허용(국토부, 지자체 협의) • 화물장치장, 여유장치능력, 운송사, 비화물연대 회원 소유 차량 현황 등 각종 자료 작성	• 터미널 전체 협의회 개최를 통한 운송거부 대상 터미널 접안 예정선박 他터미널로 전배 추진 • 터미널 운영사 등 의견수렴 및 조치 필요사항 발굴 • 물류거점 지역 경찰 배치 상황 파악 • 불법 집단운송거부차량 견인조치 협조요청(지자체,경찰청) • 운전 중 위해 및 피해신고센터 설치(관계기관 협조)	• 터미널 장치율 고려, 운영상 지장이 있을 시 화물 강제반출 추진 • 항만 장치장 단적수 조정 등 장치장 효율성 강화 • 항만별 선석 Pooling제 시행관련 선석 배정 주관 • 기항 불편 선사 대상 접안료, 하역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관련기관 합동실태평가 및 재발방지·제도개선 방안 강구 • 터미널운영사, 기항선사 등 항만이용자 관리 강화
사장		• **초기상황 확인**(보고 : 물류전략실장/물류단지부장) – 대규모집회 추진 및 운송거부 결의, 대정부 압박 등 관련 동향 파악 – 요구사항 및 자체 대처현황 파악	• 비상대책본부 점검 – 항만인근 대규모집회 추진 및 운송거부 결의 등 관련 동향 파악 – 관련동향 자체분석·관리 – 관련기관별 비상대책 방안 확인 •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2차관) 등과 상시 협조 채널 가동,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논의 – 정부의 대응 방향 논의·제시 · 대체 수송수단·인력투입, 불법행위자 처리방침,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부여방안, – 대국민/대외 홍보 방향	• 중앙수송대책본부 점검 – 운송거부, 운행차량 방해 관련 동향 파악 – 비상대체수송현황 등 관련기관별 비상대책 추진현황 점검 • 대국민 홍보 강화 – 관련기관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및 언론인터뷰 실시 • 장관 명의 담화문, 친서 발송 등 – 항만 신인도 회복 등 선사(대리점) 등에 서신 발송, 언론 기고문 게재	• 항만물류 현장방문 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규모 확인 • 관계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후대책 시행 • 선사, 하역사 등 항만물류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지시
담당팀장		• 비상수송대책반 점검 – 대규모집회 추진 및 운송거부 결의, 대정부 압박 등 관련 동향 파악 – 관련동향 자체분석·관리 – 분야별 비상운영 대책 및 현황 점검 – 비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긴급대책 발동 필요성 검토 – 집단행동 발생시 대책 확인 등 • 기자 간담회 – 집단행동발생시 차질없는 수송대책, 법과 원칙에 다른 엄정대처 등 •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 비상대책본부장 보좌 • 여수광양항만공사(재난안전실)는 여수청 비상대책본부에서 항만운영대책반 편성·운영	• 비상대책본부장 보좌 • 여수광양항만공사(재난안전실)는 여수청 비상대책본부에서 항만운영대책반 운영	• 비상대책 본부장 보좌
대변인(홍보팀)		• 홍보활동 시행 – 운송거부 관련 대국민 홍보, 중단촉구, 불법행위 엄정대처, 운송복귀자 인센티브 등 – 필요시 관련기관 홍보관리관과 협조, 공동 홍보활동 전개	• 홍보활동 시행(범정부 합동) – 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책, 대국민 협조사항 – 운송거부 행위중단 촉구·불법행위 엄정대처·운송복귀자 인센티브 등 내용 중점 홍보 * 담화문 발표, 관련기자회견 실시, 홍보유인물 간행·배포, 소셜미디어 확산 등 지원	• 홍보활동 강화(범정부 합동) – 매체이용,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행위의 부당성, 정부입장 및 국가경제 피해, 교통통제상황 등) * 방송, 신문, 인터뷰, TV 홍보프로그램 등 – OBS문자매세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정부 공동 담화문 발표 – 출입기자 설명회 및 장관친서 발송(사회저명인사, 모니터 요원등)	• 복구차원의 홍보활동 전개(범정부 합동) – 매체이용,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상황종료 및 정상화, 물류기능회복,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및 재발방지노력 등) * 방송, 신문, 인터뷰, TV 홍보프로그램 등 – OBS문자매세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대 국민 담화문 발표

Ⅲ 부서별 협업기능 (육상화물운송)

기능	①재난상황관리	⑨ 사회질서 유지 기능	⑪ 재난 수습 홍보 기능
주관 부서 (연계 부처)	물류전략실 및 물류단지부 (관심, 주의 단계), 재난안전실 및 상황실 (경계, 심각 단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물류전략실 물류단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경영지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주요 임무	- 동향 파악·전파 및 보고(장·차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총리실, 관계기관) -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방안 논의 - 범정부 종합비상대책 강구 및 시행 - 단계별 경보 발령 요청(국토교통부) -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차관),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국장) 구성·가동 - 지방대책본부 구성·가동(지방청) -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 운영(지방청, 항만공사, 국토부 등) - 관련집단과 대화와 설득, 조정활동 - 대체수송수단/인력 투입 및 상황관리 - 군 컨테이너차량 투입·지원(국토부, 국방부) - 불법집단운송거부차량 견인조치(지자체,경찰청) - 정상운행 화물차량 및 대체수송차량 보호 조치(경찰청) -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방안수립 및 시행(국토교통부) - 운송거부자 명단 파악(국토교통부, 경찰청)	- 운송거부자 설득 및 중요시설 보호(특수재난실, 노동부, 지자체, 경찰청) - 운송방해 행위차단 및 화물운송 차량/운전자 보호(특수재난실, 경찰청) - 불법 방치차량 견인조치(지자체,경찰청) - 운송방해행위자 검거 및 사법처리, 교회등을 이용한 농성 장기화 차단(경찰청)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소셜 미디어, 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책, 대국민 협조사항 등)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중수본-중대본과 공동대응)

Ⅳ 관계기관 주요 임무 (육상화물운송)

부 처	주 요 임 무		
	주의 사전대비	경계 초동조치	심각 중수본·중대본
국토부	· 관련사항 모니터 및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 자체 상황실 설치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 · 운송거부 자제설득 및 불법행위자 엄정대처 방침 천명(필요시 관계부터 합동) · 관계집단 요구사항·관련정책 종합검토 및 대책수립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체수송 수단·인력 현황 확인 ·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관심, 주의경보 발령 후 국가안보실 및 유관기관 전파	· 자체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차관) 설치 · 운송 거부자 불이익 및 운송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시행 · 운송 거부행위 중단 촉구 및 엄정 대응방침 천명 · 대체 수송수단 · 인력 투입 * 철도, 비회원, 군 차량 등 · 업무복귀명령제 발동 관련 사전 검토 · 홍보활동 전개 (필요 시 범정부 합동)	· 국무조정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강화 * 연대 파업시 합동 대책본부 구성, 협조/지원체제 구축 등 · 국방부/산업부/해수부와 비상수송대책 공동 시행 · 인센티브 제공, 불이익 방안 시행, 대화·설득 병행 · 업무 개시명령제 시행 (국무회의 심의후) · 홍보활동 전개 (필요 시 범정부 합동)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기관등에 통보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기관등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해당 지자체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필요시) -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 언론브리핑, 담화물 발표 등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주관부처와 협조) 등
경찰청	· 관련동향정보수집 및 관련기관 전파,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수립	· 주요지점 경찰력 배치, 불법행위 차단, 교통방해등 운송방해행위 대처, 방치차량 견인조치 등	· 주요지점 경찰력 배치, 불법행위 차단 및 행위자 사법처리, 방치차량 견인조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 검거 등 농성장기화 차단
해양 수산부	· 자체 비상수송대책반 운영, 공컨테이너의 ICD 및 부두밖 인근 야적장 등 으로 이전, 국방부 협조 요청(군부대 연병장 임시컨테이너 야적장 활용)	· 동향 파악 강화 및 전파, 지원받은 군 컨테이너 차량/인력 주요항만 투입, 터미널별 비상수송을 이한 차량 확보, 장치장 운영 효율화, 임시장치장 확보	· 동향 파악 강화 및 전파, 지원받은 군 컨테이너 차량/인력 주요항만 투입, 터미널별 비상수송을 위한 차량 확보, 장치장 운영 효율화, 임시장치장 확보
산업통상 자원부	· 컨테이너와 BCT 화물차간 연대투쟁대비 국토부 등과 비상수송대책 공동강구	· 자체 BCT 분야 비상수송대책 시행, 지역별 시멘트공장 동향파악 강화	· 자체 BCT 분야 비상수송대책 시행, 지역별 시멘트공장 동향파악 강화
국방부	· 군 위탁 차량/인력 투입준비	· 군 위탁차량/투입, 주요항만 인근 군부대 연병장 임시적치장 활용 준비	· 군 위탁차량/ 인력투입
고용 노동부	· 노조동향 파악 및 관계기관 전파, 노조지도부와 접촉 집단운송거부 자제 설득	· 노조 지도부 등 다양한 협상 체널가동, 운송거부 돌입 자제 설득	· 다양한 협상 체널가동, 운송거부 돌입 자제 설득
지자체	·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파악 및 전파,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 시행 준비	·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및 전파, 자가용 유상운송 홍보 및 허가 시행, 집단운송거부자 확인	·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및 전파, 자가용 유상운송 홍보 및 허가 시행, 집단운송거부자 확인

Ⅴ 비상연락망

□ 해양수산부

기관명	부 서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해 양 수 산 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044-200-5769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51-609-6411	051-609-6419
인 천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32-880-6482	032-884-3563
여 수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61-650-6056	061-654-2076
마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55-981-5140	055-242-0578
동 해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33-520-6175	033-520-6160
군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63-467-6136	063-441-2357
목 포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61-280-1707	061-280-1666
포 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54-245-1535	054-245-1592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31-680-7234	031-680-7239
울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52-228-5610	052-228-5569
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물류과	041-660-7655	041-663-0348

□ 육상화물 집단운송거부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02-770-4787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02-770-4260	02-770-4798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2	044-200-2367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02-2100-0728	02-2100-5458
국토교통부 (주관기관)	물류산업과	044-201-4020	044-201-5601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6141	02-748-5778
	군수관리관	02-748-5708	02-748-5799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3	044-203-4737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30	02-503-9739
경찰청	경비과	02-3150-2656	02-3450-2656

◆ 육상화물운송 분야 실무 매뉴얼 ◆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을 근거로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소속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육상화물 운송분야」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대응 이외의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 함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 함

【제·개정 이력】

일 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 부서	협의기관
‘14. 5.	제정	해양수산부 출범		
‘17.4.	‣ 육상화물 운송분야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안 반영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정(‘16.10)에서의 개선사항 반영 ‣ 기관(부서)명, 타기관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응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반영 및 국토부 표준메뉴얼과의 연계성 강화 등	항만 운영팀	
‘19.10.	‣ 기관(부서)명, 타기관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안전 보안실	
‘20.03.	‣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안전 보안실	
‘20.05.	‣ 비상연락망, 주관부서 등 현행화		안전 보안실	
‘20.12.	‣ 명칭 현행화	매뉴얼정기 점검 및 조직개편	안전 보안실	
‘21.5.	‣ 명칭 현행화	매뉴얼정기 점검 및 조직개편	안전 보안실	
‘22.2.	‣ 비상연락망, 주관부서 등 현행화	비상연락망 현행화, 재난관리체계 등 보완내용 반영	안전 보안실	
‘22.4.	‣ 명칭 현행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재난 안전실	

목 차

Ⅰ. 일반 사항 ····· 1

1. 목 적 ····· 2

2. 적용범위 ····· 2

3. 관련 법규 ····· 2

4. 용어 정의 ····· 4

Ⅱ. 위기 유형 및 경보 ····· 5

1. 위기의 유형 ····· 6

2. 전개 양상 ····· 6

3. 위기 경보 ····· 7

가. 위기경보 수준 ····· 7

나. 위기경보 발령체계도 및 절차 ····· 8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2

1. 목 표 ····· 13

2. 방 침 ····· 13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 14

4. 위기관리 체계 ····· 16

가. 종합체계도 ····· 16

나. 위기관리 기구 및 임무·역할 ····· 17

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대응체계 ····· 18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27

1. 관　심 ····· 28

가. 상 황 ····· 28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28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30

2. 주　의 ····· 33

가. 상 황 ····· 33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33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35

3. 경　계 ····· 38

가. 상 황 ····· 38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38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41

4. 심　각 ····· 44

가. 상 황 ····· 44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45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48

< 대응조치 관련 참고자료 > ····· 51

Ⅴ. 위기 유형별 조치 및 절차 ····· 95

1. 전국적 범위 컨테이너 화물차 집단 운송거부 지속 ····· 96

가. 상 황 ····· 96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97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00

2. 전국적 범위 BCT 화물차 집단 운송거부 지속 ····· 102

가. 상 황 ····· 102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103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04

<부 록> ····· 106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3.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4. 위기 유형별 사례 및 관련 일지

5.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시 국교부-해수부 업무협력 방안

6.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 관련 업무협약서(국교부-국방부)

7. 관련기관 연락처

8.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9.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 체계

Ⅰ. 일반 사항

I. 일반 사항

1. 목 적

가.「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육상화물 운송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적 차원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나. 육상화물 운송 거부시 항만내에서 수출입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항만장치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세부적인 대응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가. 항만물류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이와 관련있는 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 등 항만 관련 기관과 단체의 항만물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나. 육상화물 운송 종사자의 운송거부 등으로 인하여 항만내에서 수출입 물류기능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항만장치장의 효율적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

3. 관련 법규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다. 형법

라. 도로교통법

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바. 자동차관리법

사. 경찰관직무집행법

4.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 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비상상황	•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결과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증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실무기관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관리 활동	①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활동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구 분	내 용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위 기 경 보 수 준	① 관심(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 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육상 화물운송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트럭 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것
육상 화물운송 분야 종사자	트럭 등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집단 운송거부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국가 물류체계 마비 사태	화물운송 집단 거부 등으로 인해 화물운송의 중단 또는 심대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가 물류체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
대체자원	국가기반시설 마비시 최소 기능 유지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물자, 장비

Ⅱ. 위기 유형 및 경보

Ⅱ. 위기 유형 및 경보

1. 위기의 유형

가. 컨테이너 트럭 등 육상 운송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운송 마비 및 국제환적 화물의 기항 기피

나. BCT(시멘트) 등 특정산업 육상 운송분야 종사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관련 화물의 운송 마비

2. 전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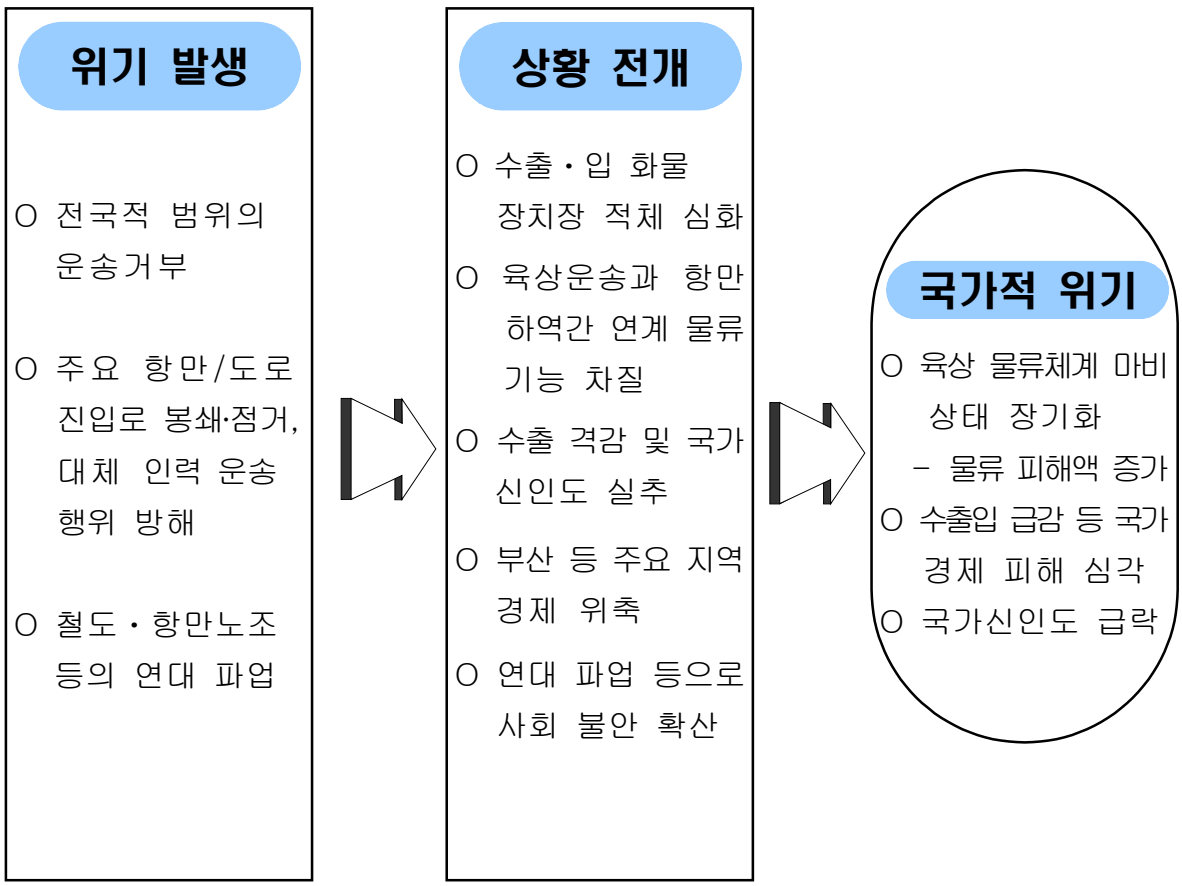

3. 위기경보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 기준	비 고
관심 (Blue)	o 화물운송 관련 제도 개선 공개 요구 o 국토부/ 화주 등을 상대로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o 국지적 집회 빈발 및 대규모 집회 요구	징후활동 감 시
주의 (Yellow)	o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집회 개최 결정 o 국지적 집회를 통해 운송거부 연쇄 결의 o 기한내 對정부 요구사항 수용 거부시 전국적 집단운송 거부를 연쇄 결의 o 대정부 압박 및 대국민 홍보·선전 강화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계획 점검
경계 (Orange)	o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집회 개최 o 부산 등 일부 지역 중심, 국지적 운송 거부 돌입 * 수출·입 화물 장치율 상승 등 이상 징후 o 전국적 운송거부 독려 o 고속도로 집단 서행운전 등 시위 전개 o 철도노조 등 관계집단 연대 투쟁 전개	대응태세 돌입
심각 (Red)	o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 o 운행차량 운송방해, 공단·항만 출입 봉쇄 지속 o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 전개 등 불법행위 빈발 o 철도노조 등 관계집단 연대 파업 돌입 o 수출·입 화물 처리 차질, 국제 환적화물 기항 기피	즉 각 대응태세 강화

나. 위기경보 발령체계도 및 절차

(1) 국토교통부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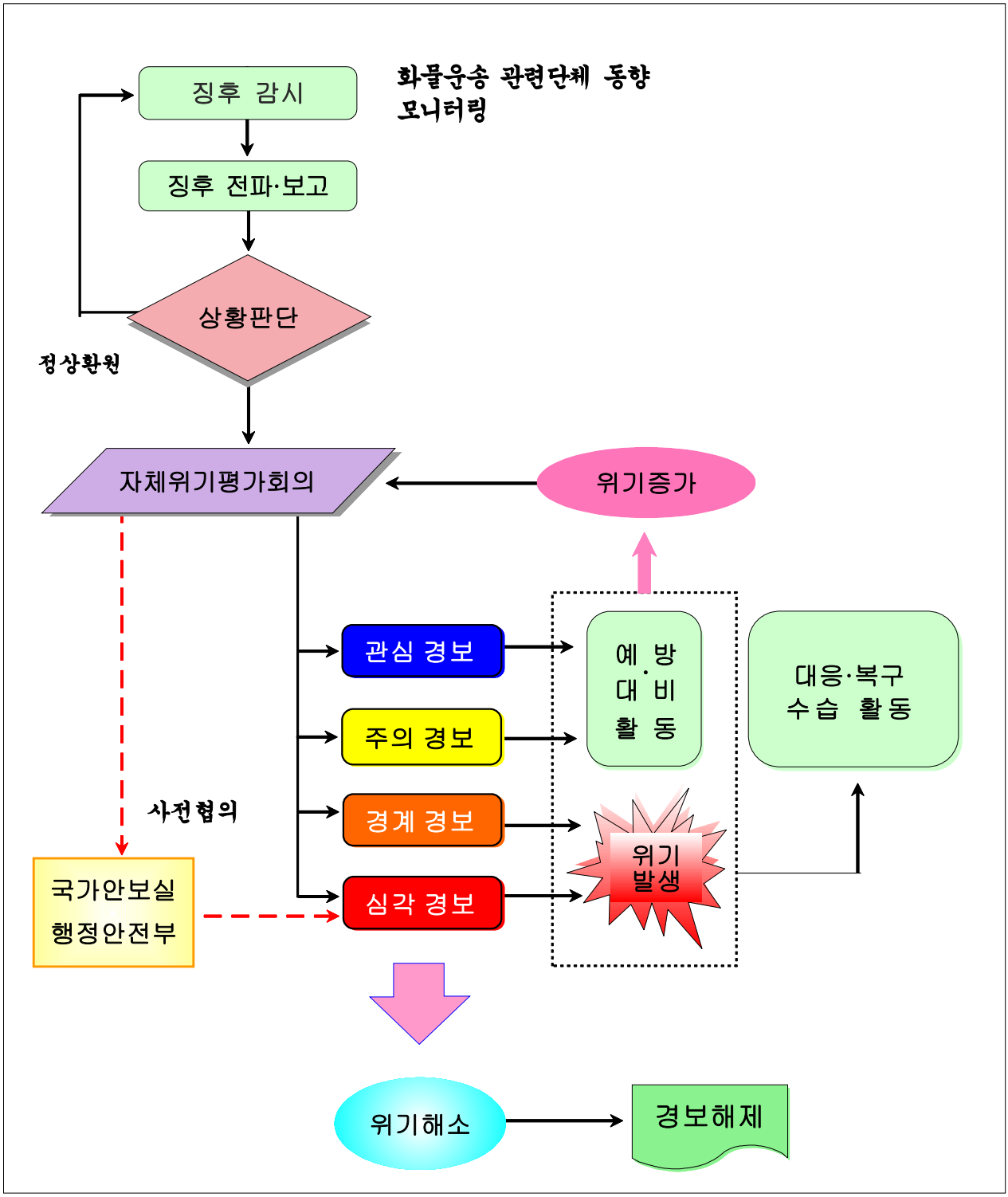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위기경보 발령 시 유관기관과 지자체(실무기관)에 즉시 통보

* 유관기관 : 국가안보실, 안행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노동부, 경찰청
* 지자체 : 17개 시·도, 전국 시·군·구

(2) 국토교통부 위기경보 절차

가. 주관기관(국토교통부)은 본 매뉴얼이 규정하는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나. 주관기관(국토교통부)은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정도의 경보(심각) 발령 시에는 국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에 경보 발령

다. 주관기관(국토교통부)은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 발령 시 관련 기관과 국가안보실에 신속히 통보

라. 위기경보 수준 평가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마. 유관기관(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적절한 경보 발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기 징후와 관련된 자료(정보)를 주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

바. 국토교통부『위기평가회의』는 국정운영기조,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책을 최종 확정

사.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 사전조치(경보발령)를 시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

(3) 해양수산부 위기경보 처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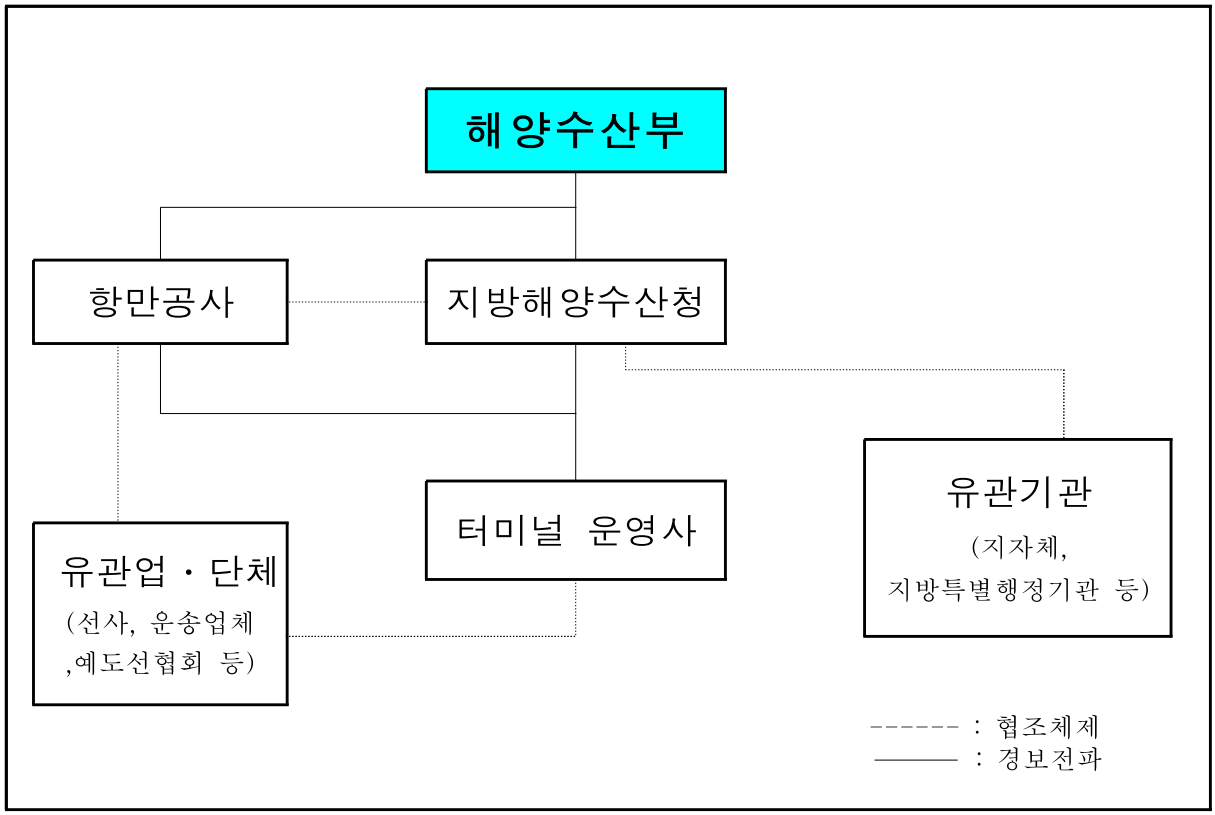

(4) 해양수산부 위기경보 처리절차

가. 해양수산부는 항만 등에서 육상화물 운송거부 위기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에 전파

나.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공사, 유관기관, 컨테이너 터미널운영사, 유관업·단체 등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위기징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해양수산부에 제공

다. 해양수산부는 주관기관(국토교통부)으로부터 위기경보를 받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에 전파

라.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에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기경보 접수 즉시 관할 터미널운영사에 전파**

마.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가. 육상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운송 거부행위 예방과 운송 거부로 인한 부정적 파급영향의 최대한 억제

나. 운송 거부 사태 시 국가 물류기능의 최소 수준 유지와 조기 정상화

2. 방 침

가. 운송 거부 유발요인의 사전 발굴·관리와 합리적 해소책 강구

나. 운송 거부 관련정보의 적시적 수집과 전파 · 공유

다. 운송 거부행위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사전 수립과 동 대책의 적절성 제고

라. 주관기관과 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황 대처

마. 범정부 차원의 일관 · 통일된 대응원칙 견지와 시행

바. 사회 안정 · 국가신인도 유지 · 조기 정상화에 역점을 둔 홍보활동 전개

사. 최소한의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대체자원 투입 등 비상대책 시행

자. 물류 기능의 정상화 등 위기상황의 조기 해소와 재발요인 관리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위기대응 지침

(1) 목표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조치로 항만물류 기능 최소 유지 및 국가적 피해 최소화

(2) 대응방향

○ 화물 운송거부 집단행동 미참여 독려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대처

○ 비상 수송을 위한 대체수단과 인력의 적시 투입

○ 대 국민 홍보 강화

(3) 대응 지침

○ 관련기관, 터미널운영사 등을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육상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동향을 적극 파악하는 등 사전대비 태세 강화

○ 항만장치장 효율성 대책 점검 및 항만물류의 저해요소를 사전 발굴·개선하는 등 사태 발생시 항만물류 피해 최소화 여건을 조성

○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로 불법행위·운송거부 행위 차단

○ 사전 확보·협조된 비상 수송용 대체수단과 인력을 적시에 투입, 항만물류 기능을 최소한 유지

○ 제도 개선사항·운송거부행위 부당성·국민경제 피해 등 집중 홍보로 반대여론 형성 및 운송복귀 압박

○ 사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언론 브리핑·홍보 등을 적시에 실행

□ 판단 및 고려 요소

- ㅇ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대응방안 공동 강구 등 협조체계 구축 여부
- ㅇ 육상 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들과의 대화·협의체계 유지 여부
- ㅇ 최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 수단과 인력의 확보 여부
- ㅇ 대 국민 홍보체계 구축 및 홍보 역량 확보 여부
- ㅇ 비상시 항만여건 및 관련기관(선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등)과의 협조체계 여부
- ㅇ 수출입 화물 처리차질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

4.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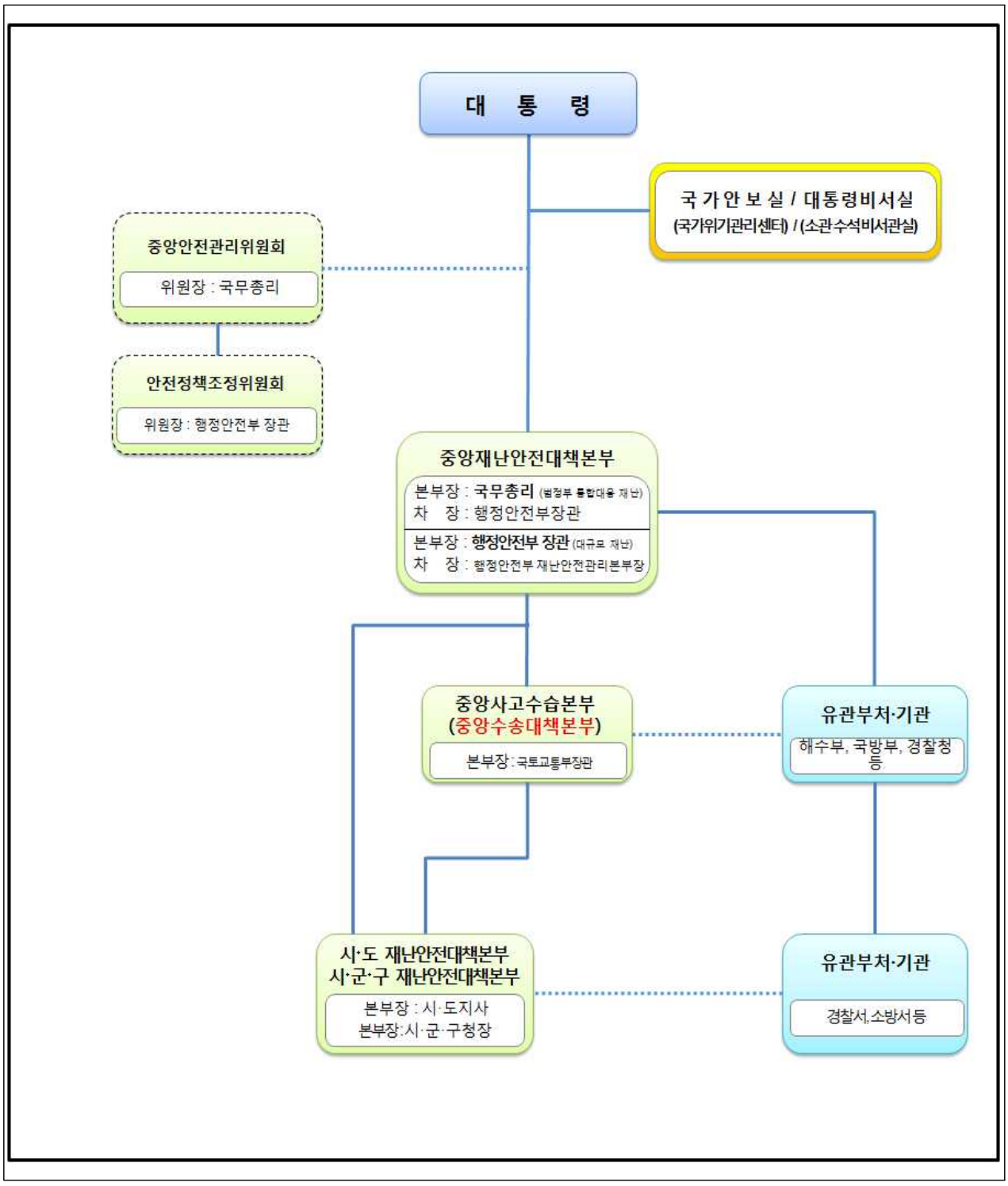

※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발생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운송거부 사태의 해결 및 국가 물류기능 유지에 필요한 대책의 수립과 제반 조치업무를 총괄 수행

나. 위기관리 기구 및 임무·역할

구 분	역 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 화물운송 분야 위기관련 정책 심의 ○ 위기관리 관련 대응정책 총괄 조정 ○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핵심기반 분야 위기관리활동 관장·협조·지원 체계 가동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위기발생시 자원통합 및 지원 ○ 주관기관 요청 있을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조치 등 ○ 위기관리 업무 평가 ○ 대국민 홍보 지원
수습지원단	○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토교통부장관)	○ 관련 상황 대처 및 비상대책 시행 주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유관기관과 협조 ○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습지원단 파견요청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장)	○ 해당 관할지역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수습·복구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강구 - 지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사실을 재난현장의 주민에게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보

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대응체계

(1)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도

<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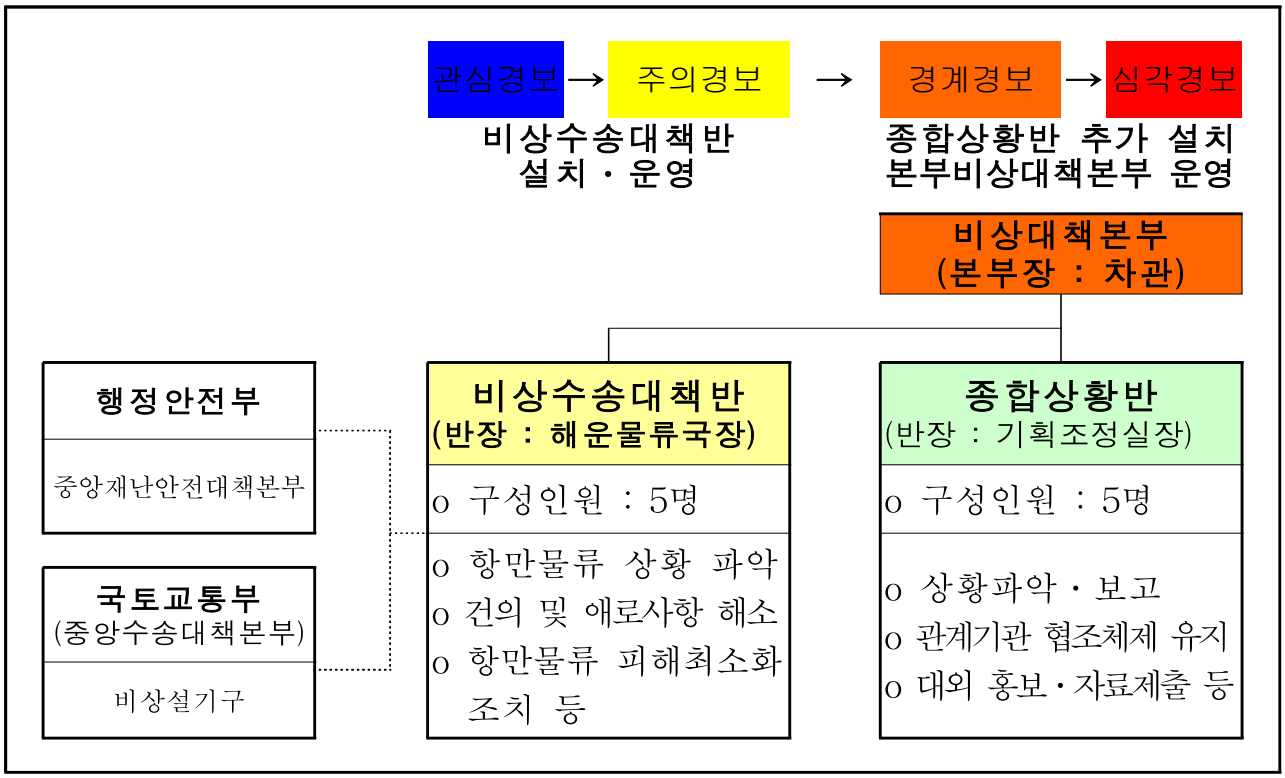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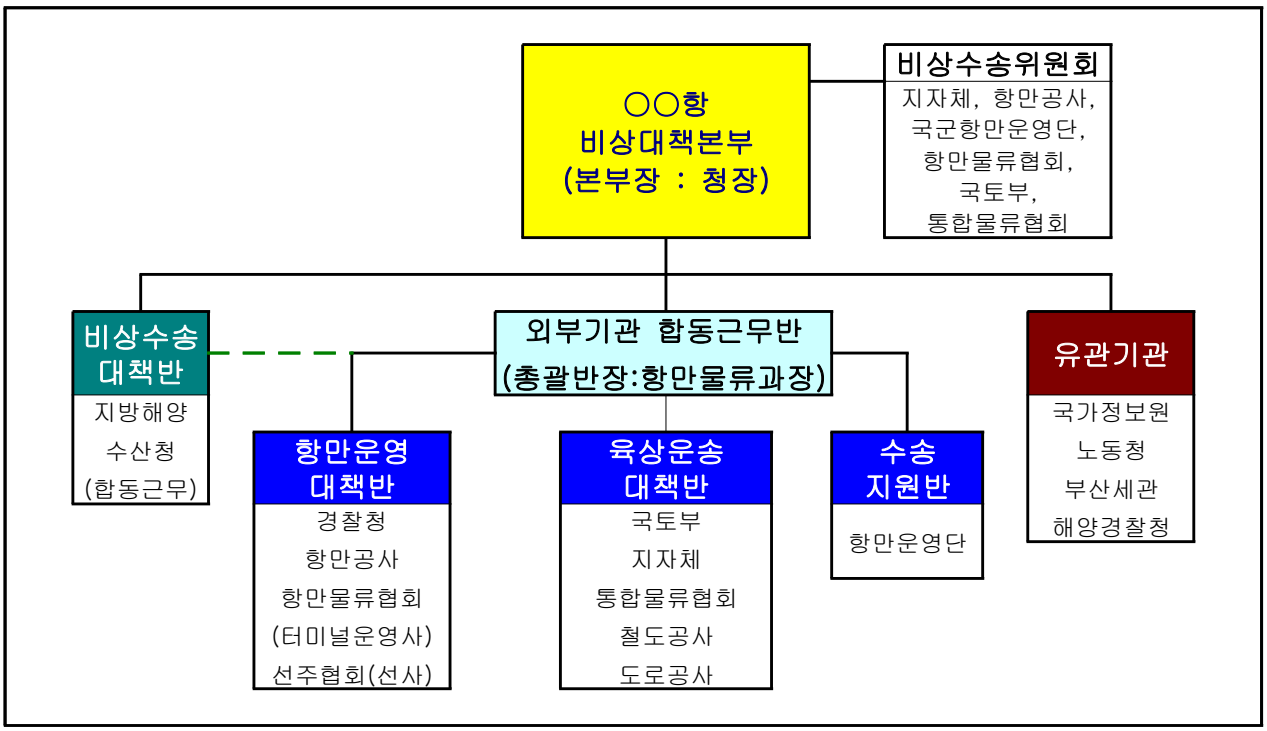

※ 지방청 여건을 고려하여 비상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행동매뉴얼에서 추가 검토

(2)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본부 운영

□ 본부 비상대책본부(반) 설치・운영

① 목적 및 운영기간

○ 목적 :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된 사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 운영기간 : 주관기관(국토부) 위기경보 발효 ~ 상황 종료시

-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 :「관심・주의단계」에서 운영

・ 경계단계의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비상수송대책반에서 종합상황반의 역할을 수행

-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차관) : 「경계단계」부터 운영 개시

・ 종합상황반(반장 : 기획조정실장)을 추가로 설치

○ 장 소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내

- 비상대책본부로 확대・운영(경계단계)시 근무인원상 공간이 협소할 경우 별도 회의실에 종합상황반 설치

② 조직구성 및 임무

○ 비상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과 비상수송대책반으로 구성

- 각 반별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인원 보강

- 해운물류국 직원을 우선적으로 차출하여 구성하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국 직원도 차출

○ 각 반별 임무

- 종합상황반은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안행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비상수송대책반은 항만별 물류상황 파악 및 애로·건의사항 해결, 항만물류 피해 최소화 조치 등을 중심으로 이행

※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비상수송대책반에서 종합상황반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

○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음

구 분	구성시기	구성 인원	주요임무	비 고
비상대책본부 (본부장 : 차관)	경계단계	10	비상대책본부 총괄	
종합상황반 (반장 : 기획조정실장)	경계단계	5	상황파악·보고, 대외홍보,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비상수송대책반 (반장 : 해운물류국장)	관심단계	5	항만물류 피해최소화 조치, 항만별 물류 애로사항 해결 등	비상대책본부 구성 이전에는 종합상황반 역할 겸임

③ 근무요령

≪ 근무 시간 ≫

- (관심·주의 단계) 평일 주간 근무(08:30~19:00), 비상연락체계 유지
- (경계·심각단계) 평·휴일 24시간 근무 ~ 상황 종료 시까지

※ 상황 수준 및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근무편성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 상황 보고 ≫

- 1일 2회(09:00 및 17:00) 화물연대 관련 종합동향 및 대책 추진경과 내부보고(긴급 상황 발생시 수시로 보고)

※ 관심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시기 및 회수 조정 운영

-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상황보고는 주관기관 등의 상황운영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운영

□ 지방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 지방비상대책본부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본부장을 맡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 비상대책본부의 장은 경계단계에 기관별 합동근무 실시하기 위하여 실무대책반 참여 대상자 해당기관에 파견 요청

- 관할 청장 주관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를 구성(주의단계), 관할 항만 내 육상화물운송 대책에 대한 현장 업무 총괄

- 합동근무 기간은 경계단계 ~ 상황종료 시까지이며, 근무시간은 투입일 08:30 ~ 익일 09:00까지이며 24시간 교대기준으로 투입

○ 지방비상대책본부는 본부의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과 동시에 구성·운영

※ 단,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현지 항만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시기 조정 가능

- 항만공사는 자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 항만여건 등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구성·운영 가능

○ 근무요령, 인원구성 등은 각 지방청의 항만여건,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항만의 관할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결정

< 000항 비상대책본부 반별 인원 구성(예시) >

구 분	내 용
000항비상대책본부(1명)	· 00지방해양수산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비상수송대책반 (12명 : 반장3, 근무9)	· 00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을 반장으로 하고, 계장급 1명 및 담당자급 2명으로 한 총괄반, 상황반 및 지원반으로 운영한다.(반별 3명씩 1일 교대근무)
외부기관 합동근무반 업무총괄(3명)	· 00지방해양수산청 총괄반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계장급 1명, 담당자급 1명을 운영한다.
항만운영대책반(4인)	· 항만공사담당 1명, 항만물류협회 1명, 선주협회 1명, 경찰청 1명으로 항만공사 주도하여 운영한다. (필요시 특정 터미널 운영사에서 참여) · 항만공사가 없는 지방청의 경우 실무대책반이 항만운영대책반장을 겸직할 수 있다
육상운송대책반(5인)	· 국토교통부 파견 5~6급을 반장으로 하고 국토청 담당 1명, 지자체 1명, 통합물류협회 1명, 철도공사 1명, 도로공사 1명을 육상운송대책반으로 운영한다
수송지원반(1인)	·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지원단 내 연락간부 1인으로 운영한다

○ 지방 비상대책본부 반별 업무 (예시)

① 비상수송대책반(지방해양수산청)

·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총괄반 **(항만물류과장)**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대외기관 업무 협조 및 대언론 관계, 비상대책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중점 보호시설 파악 및 보호계획 수립, 비상대책본부 업무 총괄 등
상황반 **(해양수산 환경과장)**	일일상황종합 및 보고, 일일 터미널현황 파악, 일일화물현황, 일일반출입 및 장치장 현황,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 지원 수요파악, 트레일러 가용현황, 장기 적체화물의 반출현황 파악 등
지원반 **(선원해사 안전과장)**	철송·연안운송·트레일러 및 경찰병력 관련업무 지원, 재박선박 및 집회동향파악,「선사 동향파악 및 불편 해소센터」설치·운영 등

② 항만운영대책반(경찰청, 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운영사, 선주협회·선사)

(경찰청)

· 국가중요시설 보호 조치

▸ 부두 앞 집회 관련 경찰병력배치 지원

▸ 지방청 청사(비상대책본부) 경찰병력배치 지원

▸ 부두시설 불법점유행위 단속

· 운송자(차량) 보호조치 및 안전 확보

▸ 경찰 동승 및 에스코트 요청 시 지원

▸ 운송사별 경찰차 전담 배치

▸ 주요 배후 수송망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경찰인력 고정 배치

▸ 화물연대 미 가입 운송차량 운행방해 등 위법행위 단속

▸ 화물연대 운송방해 피해차량 사고접수(관할경찰서)

· 화물 수송 지원

▸ 부두 출입도로 상의 체증유발 행위 단속

▸ 비상용 견인차 및 열쇠업체 연락망 구축(비상시 활용)

(항만공사)

- **국가중요시설 보호 조치**
  - 화물연대 부두별 집회 등 동향 파악
  - 부두 게이트 및 부두 내 순찰 등 자체경비 강화
  - 주요 물류시설 점거방지를 위한 경찰병력 배치 요청
  - 각 부두별(운영사) 항만 보안·경비 강화
- **대체수송수단 확보 추진**
  - 근해 외항선사를 통한 수도권 화물 수송
  - 주변항으로 선박 및 화물 전배 검토
  - 부두 간 환적을 위한 비상 '컨'선박 투입 검토
- **부두운영 정상화 추진**
  - 비상시 대비 임시 장치장 추가 확보
  - 운행차량 보호용 임시주차장 확보
  - 터미널 여유장치능력 등 실시간 점검
  - 터미널 장치장 현황 등 각종통계자료 작성
  - 선사 및 해외언론 등 동향파악 및 항만 정상 운영 홍보
  - 주요 선사 대리점 및 국내 지사 비상연락망 확보
  - 「화주·선사 불편 해소 센터」설치·운영
  - 철송, 군차량 등 대체수송 지원
  - 한시적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운송 허용(북항-신항)
- **비상대책본부 조치·지시사항 홍보**
  - 운송 복귀 시 혜택 등 주요 일간지 홍보 등

(항만물류협회)

- 터미널 장치장 현황 등 각종통계자료 작성
- 운영사별 부두 장치율 자체 관리
- 운영사 장기 적체화물 및 공'컨' 임시 장치장 반출
- 운영사 CY 자가 운송 물량 24시간 반출작업 협조
- 운영사 Y/T차량 임시번호판 발급 일괄신청·수령(차량등록사무소)

· 운영사 군 동원차량 운전사 숙소 지원
· 운영사 인근 항만 화물전배 처리 협조
· 운영사 운송차량 자체경비 강화 협조
· 운영사 외국선사 등 항만정상 운영 홍보
· 운송차량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 티켓 회원사 배부
· 비상대책본부 조치·지시사항 회원사 등에 홍보

(선주협회)
· 비상대책본부, 항만공사 및 항만물류협회와 업무공조
· 비상대책본부 조치·지시사항 등 회원사 등에 홍보

③ **육상운송대책반(국토부, 지자체, 통합물류협회, 철도공사, 도로공사)**

(국토부)
· 육상운송대책반 업무 총괄
· 군 컨테이너 차량 활용 관련 비상수송위원회 참석
· 군 지원 차량 인수 및 관리(차량배분 담당관)
· 군 지원 차량 연료비 및 식사, 숙박 등 제반 소요비용에 대한 정산관련 업무
· 군 지원 차량 수요 파악 및 차량 배차
· 군 컨테이너 차량(운전인력) 인계·인수 관련 업무
· 군 컨테이너 차량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실적 관리
· 군 지원 차량 운행 관련 안내 요원 배치 등 지원업무
· 고속도로·국도 상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한 상황 파악 및 관련기관 연락 체계 유지
· 화물연대 운송방해 피해차량 수리보상 예산 지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행정청에서 발급한 식별표시 부착하고 운행하는 컨테이너차량 및 BCT수송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지원
· 면제차량 고속도로·국도 과적 단속완화 및 관련 민원 처리 지원

· 화물운송거부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관련 업무 수행

▶ 운송사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고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차량 등

(지급정지절차 : 운송사 업무복귀 지시 → 미이행차량 지자체 통보)

(지방자치단체)

· Y/T차량 운행허가 및 Y/T차량 임시번호판 발급(차량등록사무소)
· 비조합원 안전운행을 위한 번호판 즉시 교체발급(차량등록사무소)
· 비조합원 운행차량 번호판 가림운행 허용
· 지자체 경계 내 과적단속 완화, 불법 주·정차 단속
· 컨테이너 임시 장치장 확보
· 중점 보호시설 및 운전자 보호조치 시행
· 운송거부 운전자 운송동참 적극 설득 조치
· 화물연대 운송방해 피해차량(사고접수) 수리 보상(해당구청)
· 대형견인차 배치 및 열쇠업자 연락처 확보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송차량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
· 화물운송거부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관련 업무 시행

(철도공사)

· 철도수송관련 열차투입 및 운행시간 연장 등 육로운송 지원
· 각 운송사에 대한 직영차량운행 현황 파악
· 비상대책본부 조치·지시사항 홍보

(도로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행정청에서 발급한 식별표시 부착하고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 및 BCT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 과적단속 완화
· 비상대책본부 조치·지시사항 홍보

(통합물류협회)

· 운송사별 차량 운행 현황 파악 및 비상차량 확보

· 소속 운전자 현황(화물연대 가입 및 미가입) 파악
· 비상시 가용차량 및 운전자 추가 확보 현황 파악
· 군 지원차량 배차 요청 등 운송사별 지원현황 관리
· 화물운송거부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관련 업무 수행
· 운송차량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 티켓 회원사 배부
· 비상대책본부 조치·지시사항 회원사 등에 홍보

④ **수송지원반(국군수송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항만운영단))
· 부대별 차량 및 인력지원 체제 유지 및 안전교육 실시
· 군 보유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운전병 투입 지원
· 군 위탁차량 이외의 지원가능 차량 및 인력 현황 파악
· 군 컨테이너 차량 활용 관련 비상수송위원회 참석
· 군 지원 차량 인수 및 관리(차량배분 담당관)
· 군 지원 차량 연료비 및 식사, 숙박 등 제반 소요비용에 대한 정산관련 업무
· 군 지원 차량 수요 파악 및 차량 배차
· 군 컨테이너 차량(운전인력) 인계·인수 관련 업무

○ **유관기관 협조사항**

(국가정보원) 부두 내 항만경비 강화 및 보안관계기관 협조 지원
(지방노동청) 파업근로자 파업자제 협조,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지역세관)
· 수출품 선적기간 연장 및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 비상시 적 컨테이너에 대한 임시설영특허 협조 요청
· 수입화주가 자가 운송수단 이용 시 담보제공 없이 보세운송기간 일괄 연장 등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관 심

가. 상 황

□ 0000가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
□ 정부·화주 등을 상대로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 부산 등에서 국지적 집회가 빈발하고 대규모 투쟁집회 예고
□ 他 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요구사항 수용 촉구집회 개최

나. 조치사항 및 절차

① 조치 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o 제도개선 요구 및 집회 개최 추진 등 관련동향 파악·통보 o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위기경보(관심) 접수·전파	o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관심) 접수 o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o 비상수송대책반 구성 o 항만주변 차주 동향 상시 파악 등 정보수집 강화 o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정보공유 o 항만물류 중점보호 대상시설 파악 등 유사시 대응 환경 강화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② 조치 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 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항만물류기획과)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송거부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필요시 지방청·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방청, 유관기관의 현지 동향을 파악, 주관기관인 국토부 통보

□ 위기 경보(관심) 접수 및 보고·전파(항만물류기획과)

○ 주관기관(국토교통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를 접수하여 내부보고

- 위기경보 접수 즉시 장관 및 차관, 국장에게 보고 후 비상수송 대책반 구성

○ 위기경보를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에 전파

사전 대비 강화

□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항만공사)**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주관으로 관련동향 파악 체제를 갖추고, 각 지방청 등 유관기관에 위기단계(관심) 대응조치 강화 시달

○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공사, 유관기관, 터미널 운영사, 유관업·단체 등과 협조, 관련 동향 수집·전파 및 협조 체계 구축·가동

※ 터미널운영사 : 항만에서 컨테이너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항만운송업체

○ 집단 운송거부 발생 대비, 항만 주변 차주 동향 상시 파악 및 이상 징후시 및 유관 기관에 즉시 전파

- 비상연락체계 점검, 화물임시장치장 확보 상황 점검 등

※ 항만별 임시장치장 확보 현황(양식) : 참고자료 5 참조

○ 물류관련 중점보호시설 파악, 유사시 보호체계 가동 사전 협조

○ 터미널별 자체 비상대응 조치계획 수립 유도 및 확인

- CY장치장 비상이용, CY 단적수 조절 및 임시장치장 확보 계획 등

※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양식) : 참고자료 11 참조

○ 컨테이너 부두(부산·광양항 등) 등 주요 물류시설의 관리주체,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의 연락과 업무 협조체계 확보

○ 각 지방청별 사전 점검대책 회의 등 주관

- 각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 항만공사 등 참석

○ 비상용 컨테이너 차량 활용방안 수립

- 차량 위탁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연락망, 담당자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시 차량 세부활용 지침을 마련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위기경보 해제 결정의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보고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① 항만물류기획과 / 비상수송대책반

○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를 구성, 상항파악 체제를 유지

○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파악, 정리하여 산하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

- ㅇ 물류관련 중점 보호시설 파악, 경찰 통보 및 유사시 보호체계 가동 사전 협조
- ㅇ 컨테이너 부두(부산·인천·광양항 등) 및 주요 항만(포항·마산·목포·군산·울산·동해항 등) 등 주요 물류시설의 관리 주체,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의 연락과 업무 협조 체계 확보
- ㅇ 연안컨테이너 수송능력 및 비상시 운영가능 차량 파악
- ㅇ 사전대응방안 강구 및 전파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대책 협의
- ㅇ 터미널별 일일장치율 등 파악·보고
- ㅇ 일일상황 관리 및 대외 관계기관 보고

②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비상대책본부)

- ㅇ 지방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시 상황파악 체제 유지
- ㅇ 관련기관, 터미널운영사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제 유지
- ㅇ 터미널별 장치장 현황 및 여유장치능력 점검

※ 항만별 화물장치율 및 일일반출입 현황 : 참고자료 3 참조

- ㅇ 운송사별 차량보유 현황 및 비상시 운영가능 차량 산정(부산·광양항)
- ㅇ 운송사별 화물연대 가입자 현황 및 비상연락망 확보
- ㅇ 터미널별 자체 비상대응 조치계획 수립 유도 및 확인
- ㅇ 각 지방청별 사전 점검대책 회의 등 주관
- ㅇ 각 항만별 부두 및 주요 운영업체 등 보호대상시설 파악

※ 비상시 항만별 보호대상 시설(업체) 현황 : 참고자료 11 참조

- ㅇ 비상용 컨테이너 차량 활용방안 수립

ㅇ 터미널별로 장기장치화물 현황 및 반출 실적 파악·보고

※ 항만별 장기 장치화물 현황 및 반출 실적(양식) : 참고자료 4 참조

ㅇ 항만주변 기 확보된 임시장치장 활용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장치장 확보 추진

ㅇ 지역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으로 집단운송거부시 항만물류에 이상없음을 홍보

③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ㅇ 지방해양수산청의 조치사항에 대한 협조

ㅇ 주요선사 대리점 및 국내 지사 비상연락망 확보

ㅇ 선사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ㅇ 터미널운영사의 조치내용(임무) 종합 관리

ㅇ 자체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청 등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시 협조체제 가동(소관 본부장 주관)

2. 주 의

가. 상 황

□ 0000 지부별로 국지적 집회를 지속하면서 운송거부를 연쇄결의

□ 0000 단체가 대의원대회 또는 집행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투쟁집회를 0000년 00월 00일 00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공식 결정

□ 0000년 00월 00일 까지 기한내 對정부 요구 수용 거부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공식 예고하고 對정부 압박 가시화

□ 他 노조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기한내 요구사항 수용거부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공식 예고

나. 조치사항 및 절차

①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o 대규모 집회 추진 및 운송 거부 결의, 對정부 압박 등 관련동향 파악·통보 o 관련 동향 자체 분석·관리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위기경보(주의) 접수·전파	o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주의) 접수 o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o 해양수산부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 지속 운영(지방청의 경우 자체 대책반) o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및 능력 점검 o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 구성 및 업체의 군컨테이너 차량 수요 파악 o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정보공유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② 조치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 인지·전파(항만물류기획과)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송거부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지방청·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방청,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지 동향을 파악, 주관기관인 국토부 통보

□ 위기경보(주의) 접수·전파(항만물류기획과)

○ 주관기관인 국토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를 접수하여 내부보고

○ 위기경보를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에 전파

대응 조치 시행

□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항만물류과, 지방청, 항만공사)

○ 경찰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협조 요청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하고, 각 지방청 등 유관기관에 위기단계(주의) 대응조치 강화 시달

○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공사·유관기관·터미널운영사 등과 협조, 관련동향 파악 및 협조체계 강화

○ 분야별 비상운영 대책 및 능력 점검

- 터미널 장치장 현황 및 여유장치능력 파악·점검 지속

- 운송사를 통해 트레일러 화물자동차 기사 비상연락망 확보

○ 우선활용이 가능한 임시장치장에 공컨테이너 배치(필요시)

- 장비배치 및 운송소요 비용 등은 해당 운영사에서 부담
- 인근터미널 및 임시장치장 이송은 우선적으로 비타킷 예상 운송사를 활용

○ 야드트랙터 부두밖 임시운행 가능 구간 확인 및 필요시 임시운행사전허가(지자체 차량등록사무소)

○ 지방해양수산청장 주관으로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를 구성

- 운송업체의 군 컨테이너 차량 수요현황을 파악하여 국토부에 제출(운송사 → 지방청 → 본부 → 국토부)
- 양산ICD에 대한 관리는 부산항 비상수송위원회에서 관리

< 000항 비상수송위원회 구성 >

· 위원회 구성 : 지방해양수산청, 차량관리 군부대 및 국토부, 지자체, 컨테이너 운송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항만공사 등 관계자

· 기 능 : 운송업체별 차량수요 파악 및 배정,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비용부담 등 결정

- 운송업체별 컨테이너 차량 수요 현황 파악 및 차량동원 전담관 지정·운영

·「차량동원 전담관」은 차량동원, 인수인계, 소요비용 등 관련사항 관장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① 항만물류기획과 / 비상수송대책반

○ 본부 비상수송대책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

○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교통물류실장) 직원 파견 요청시 조치

○ 분야별 비상운영 대책 및 능력 점검

- 터미널 장치장 변동현황 및 여유장치능력 파악·점검 강화
- 연안 컨테이너 수송능력 및 비상시 운영 가능한 컨테이너 차량 현황 파악

※ 항만별 연안 컨테이너선 수송능력 현황(양식) : 참고자료 9 참조

○ 화물연대 전면 집단행동 가능성 분석

○ 비상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긴급대책 발동 필요성 검토

○ 장기적체 화물 조기반출 독려 지원

○ 항만운영 상황 등 언론 홍보

○ 일일상황 관리 및 대외 관계기관 보고 유지

②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비상대책본부)

○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집회지역 불법주정차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 화물장치장 변동현황 및 운송사의 운송현황 파악

○ 화물연대의 동조현상을 보이는 운전자 현황 파악

○ 터미널 장치장 현황 및 여유장치능력 파악·점검, 트레일러 화물자동차 기사 비상연락망 확보

○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 구성(위원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장기적체화물을 양산ICD, ODCY 등으로 반출 독려

○ 집중 타깃 예상 터미널의 화물에 대한 부두내 임시게이트 활용 또는 인근 터미널로 일시 이동방안 검토

○ 우선활용이 가능한 임시장치장에 공컨테이너 배치(필요시)

○ 야드트랙터 부두밖 임시운행 가능 구간 확인 및 필요시 임시운행사전허가(지자체 차량등록사무소)

○ 군 컨테이너 차량 및 국토부(국도관리소) 지원 차량 활용 여부에 대한 운송사 수요 사전 파악

○ 각 터미널별 장기적체화물 현황 파악 및 일일반출실적 보고

○ 화물열차 운송증편 및 연안여객선 운송능력 확대 요청 검토

○ 지역내 언론을 통한 항만운영상황 등 홍보

○ 지역내 실무대책반 참여기관의 소관업무 협의 및 추진상황 관리

○ 야드트랙터 부두밖 임시운행 가능 구간 확인 및 필요시 임시운행사전허가(지자체 차량등록사무소) 협조 요청

③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 필요시 운송거부예상 터미널 접안 예정선박을 타 터미널로 전배하는 계획 마련

○ 터미널 기항 선사의 세부동향 파악

○ 선사의 불편해소 채널 구축 및 해소방안 검토

○ 서신 등을 이용, 터미널 이용 주요선사에 불편해소 방안 등 대응방안 설명

○ 터미널운영사의 조치내용(임무) 종합 관리 및 터미널운영사·선사 등과 상시 공조체제 유지

3. 경 계

가. 상 황

□ 0000년 00월 00일 00지역에서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투쟁집회 개최 및 전국적 규모의 운송거부 독려
□ 부산 등 주요 항만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운송 거부에 돌입하고 고속도로 집단 서행운전 등 산발적 시위 전개
□ 타 노조와 공동으로 주요지역에서 운송거부 돌입

나. 조치사항 및 절차

①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o 대규모 집회 및 운송거부, 대 정부 압박 등 관련 동향 파악·통보 o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위기경보(경계) 접수·전파	o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경계) 접수 o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o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차관) 구성·가동 o 군 컨테이너 차량 및 인력을 주요항만 관할지방청에 투입 o 임시장치장 확보 등 항만비상대책 시행 o 공컨테이너를 양산ICD 및 인근 ODCY 등으로 이전 o 대 국민 홍보활동 및 항만별 동향 파악 강화 등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② 조치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 인지 및 보고·전파(항만물류기획과)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송거부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지방청·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방청, 유관기관의 현지 동향을 파악, 주관기관인 국토부 통보

□ 위기경보(경계) 접수·전파(항만물류기획과)

○ 주관기관인 국토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를 접수하여 내부보고

○ 위기경보를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에 전파

대응 조치 시행

□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

- 비상대책본부 산하에 종합상황반과 비상수송대책반으로 구분·운영

○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공사·유관기관·터미널운영사 등과 협조하여 관련동향 파악 강화

○ 지원받은 군 컨테이너 차량(인력) 및 국토부(국도관리소) 지원 차량을 주요항만 관할 지방청에 투입 조치

- 운송거부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여 투입대수 조정

- 파업초기에는 비상용 컨차량을 주로 적체화물의 반출이나 부두간 환적에 주로 활용

-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비상 컨테이너차량 투입 관리

- 비상수송위원회별로 차량 전담관을 지정·관리
- 차량 인수시에는 차량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컨테이너 차량·인력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당 군부대 ↔ 비상수송위원회)
- 차량·인력을 지원받은 관계기관은 컨테이너야드(CY) 적체율 해소, 수출입컨테이너 수송 등에 우선 활용

○ 터미널별 비상수송을 위한 차량확보, 장치장 운영 효율화, 임시장치장 확보

○ CY 장치능력 확대를 위해 공 컨테이너는 부두밖 임시장치장, 양산 ICD 및 인근 ODCY 등으로 이전 조치

○ 운송거부 대상 터미널의 접안 예정선박을 다른 터미널로 전배 추진

- 터미널 전체 협의회를 개최, 선사의 기항일정 등을 파악, 추가선박의 수용이 가능한 터미널 파악
- 하역요율 상계 등의 문제는 터미널운영사가 협의해결 추진

○ 컨테이너 대체수송 수단 강화

- 컨테이너 화물열차 운송 증편
- 연안컨테이너선 운송능력 확대

○ 정부 조치 및 대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

- 지역별·항만별 물류 실태, 정부의 종합적인 대처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ㅇ 위기경보 해제 결정의 전파

ㅇ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 정리 및 보고

ㅇ 물류피해지역 물류 복구 지원 및 물류망 정상화 추진

ㅇ 관련기관 합동 실태 평가 및 재발방지·제도개선방안 강구

* 위기관리 활동 내용, 불이익 및 인센티브방안 실효성 여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재발 소지 등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① 항만물류기획과 / 비상대책본부

ㅇ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본부장:차관)로 확대 개편·운영

ㅇ 주관기관(국토부)의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2차관) 등과 상시 협조 채널 가동

ㅇ 운행 중 피해차량에 대한 운송사 또는 국가에서의 지원방안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ㅇ 선사(선박대리점)에 추진상황 및 정부노력 소개 홍보물 배포

ㅇ 항만 정상적 운영상황 등을 언론에 집중 홍보

ㅇ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파업철회 촉구 및 안정적 항만운영의 중요성 광고 게재

ㅇ 일일상황 관리 및 대외 관계기관 보고 유지

②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비상대책본부)

- ○ 지방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지방청장) 지속 운영
- ○ 터미널운영사 등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강화
- ○ 지원받은 군 컨테이너 차량 및 인력을 인수, 항만 등에 투입 조치
- ○ 터미널별 비상수송을 위한 차량확보, 장치장 운영 효율화, 임시 장치장 확보
- ○ CY 장치능력 확대를 위해 공 컨테이너는 부두밖 임시장치장, 양산 ICD 및 인근 ODCY 등으로 이전 조치
- ○ 지방비상대책본부 참여기관별 추진실적 및 계획 확인
- ○ 필요시 Y/T 차량의 부두밖 도로 운행 허가 추진
- ○ 터미널 운영사 등 의견수렴 및 조치 필요사항 발굴
- ○ 물류거점 지역 경찰 배치 상황 파악 필요시 증강 요청
-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 중 위해 및 피해 신고센터」설치
- ○ 운송거부 타켓 터미널 이외의 터미널에 대해 지속적인 장기화물 반출 추진
- ○ 집중관리 대상 터미널의 화물을 인근 터미널의 여유 장치장으로 이동하여 선적 추진
- ○ 운송거부 대상 터미널의 접안 예정선박을 다른 터미널로 전배 추진
- ○ 컨테이너 대체수송 수단 강화
- ○ 항만별 물류실태 홍보
- ○ 지역내 실무대책반 참여기관의 소관업무 협의 및 추진상황 관리

③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 자체 비상대책반 구성·운영(본부장 주관)

○ 항만공사에 「선사 동향 파악 및 불편해소 센터」 설치·운영

○ 필요시 우선 활용이 가능한 임시장치장에 공컨테이너 배치 추진

- 장비 배치 및 운송소요 비용 등은 해당 운영사에서 부담

○ 필요시 기항에 불편을 겪는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터미널운영사의 조치내용 종합 주관·관리

○ 운송사와 협조, 운송자 설득 전담조 운영

- 운송거부 운전자와 접촉하여 복귀토록 설득 조치

- 기본적으로 운송사 중심의 설득활동을 전개하되, 필요시 지방청 및 지자체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전담조 운영

○ 항만장치능력 확보 등을 위해 터미널운영사의 협조체제 강화

4. 심 각

가. 상 황

□ 부산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지적 운송 거부가 포항, 울산, 광양, 수도권 등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

o 집단운송거부 참여차량 : 000대

- 지역별(부산 000대, 광양 00대, 포항 00대 등)
- 차종별(컨테이너 000대, BCT 000대, 일반카고 00대)

□ 00공단·000항만·00시멘트공장 등 주요 시설 출입봉쇄 지속

□ 0000도로 00인터체인지 등 0개소에서 화물차(BCT 차량) 00대를 동원해서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를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 빈발

□ 타 노조와의 공동 운송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거나 주요 지역에서의 운송거부가 지속

□ 부산항 등에서 수출입 화물 처리가 차질을 빚고, 국제 환적 화물 기항 기피

□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 수송의 중단으로 시멘트 품귀사태 발생

나. 조치사항 및 절차

① 조치 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o 전국적 범위의 운송 거부, 운행차량 방해, 항만 봉쇄, 폭력시위, 수출입화물 차질 등 관련 동향 파악·통보 o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위기경보(심각) 접수·전파	o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심각) 접수 o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o 대체 수송수단 및 인력 투입, 임시장치장 확보 o 지원받은 군 컨테이너 차량 및 인력을 항만·장치장·ICD에 투입 o 터미널별 비상수송 차량, 임시장치장 등 확보 o 국토부,안행부 등과 범정부 상황 종합관리 강화 o 대 국민 홍보활동 및 항만별 동향 파악 강화 등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② 조치 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 인지 및 보고·전파(항만물류기획과)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송거부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지방청·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방청,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지 동향을 파악, 주관기관인 국토부 통보

□ 위기경보(심각) 접수・전파(항만물류기획과)

○ 주관기관인 국토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를 접수하여 내부보고

○ 위기경보를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에 전파

대응 조치 시행

□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항만공사)

○ 경찰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협조 요청

○ 지역별・항만별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주관기관(국토부) 및 유관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즉시 전파・공유

○ 지원받은 군 컨테이너 차량(인력) 및 국토부(국도관리사무소) 지원 차량을 투입 조치

- 비상수송위원회로 차량 전담관을 지정, 차량관리 및 운영에 철저
- 비상수송위원회 적극 가동을 통해 비상용 컨차량 추가 투입 규모, 시기 등을 파악・결정
- 비상용 컨차량을 장거리 운송으로도 확대 투입

○ 터미널별 비상수송을 위한 차량확보, 장치장 운영 효율화, 임시 장치장 확보

○ CY 장치능력 확대를 위해 공 컨테이너는 양산 ICD 및 인근 ODCY 등으로 이전 조치

○ 컨테이너 터미널별 장치율이 80% 이상으로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 ODCY 등으로 화물 강제반출 추진

- 반출은 해당터미널이 진행하되, 비용부담 및 반출이후 처리 등의 문제는 지방청에서 주관하여 조정・처리

○ 항만별 선석 Pooling제 시행

- 항만 전체 부두를 지방청에서 일괄 관리하여, 여유가 있는 터미널로 선박을 전배시키는 등 선석을 효율적으로 운영
- 일반부두 접안예정 선박을 해당되는 환적 컨테이너터미널로 전배

○ 부두간 환적을 위한 비상 컨테이너선 투입추진

- 일반부두와 컨터미널간 원활한 환적을 위하여 2~3천G/T급 비상 컨테이너선 투입 추진

○ 부산항 일반부두 운송책임제 추진

- 기존 각 운송사별로 운행 중인 일반부두 화물차량을 부두별 책임 운송회사를 지정·운영하여 적체현황 완화

○ 필요시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운송 전면 허용 및 연안운송 확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비컨테이너선 투입

○ 정부 조치 및 대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

-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 노력으로 지역별·항만별 물류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 등을 홍보

○ 범정부 종합상황 관리 강화 및 대외적 항만 신인도 제고 방안검토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위기경보 해제 결정의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 정리 및 보고

○ 물류피해지역 물류 복구 지원 및 물류망 정상화 추진

○ 관련기관 합동 실태 평가 및 재발방지·제도개선방안 강구

○ 국가 신인도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① 항만물류기획과 / 비상대책본부

○ 비상대책본부 산하에 설치한 종합상황반을 적극 가동, 1일 2회 종합상황 파악 및 관련기관 등에 제공

○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 정보교환 및 상황관리 강화

- 국토부 등으로부터 범정부 상황요원 파견 요청시 검토·조치

○ 부산항 컨터미널 물량처리 한계시 광양항으로 선박 전배하는 방안 협의 추진

○ 필요시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운송 전면 허용 및 연안운송 확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비컨테이너선 투입 추진

○ 일일 연안운송 실적 파악 및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에 연안해송 및 철송 활용 독려

○ 필요시 기항불편 선사의 작업시간 지연에 대한 접안료 등 감면 추진

○ 항만의 신인도 회복 등을 위해 선사(대리점)에 장관명의 서신발송 및 언론에 기고문 게재

○ 항만의 정상적 운영 및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광고 강화

②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비상대책본부)

○ 지방비상대책본부를 적극 가동하고 1일 2회 종합상황 파악 보고

○ 대책본부회의 및 실무대책반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 파악 및 필요사항 협의

○ 지방비상대책본부 참여기관별 추진실적 및 계획 확인

○ 비상용 컨테이너 차량 투입

○ 컨테이너 터미널별 장치율이 80% 이상으로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 ODCY 등으로 화물 강제반출 추진

○ 항만 장치장의 단적수를 3.5단에서 4~4.5단으로 조정하는 등 장치장의 효율성 제고

○ 불법 정차현황 파악을 전담하는 순시인원 배치

○ 항만별 선석 Pooling제 시행 관련 선석배정 주관

○ 여객용 철도를 화물운송에 투입토록 철도공사에 요청

○ 연안운송이 많을 경우 선박 추가투입 문제를 해당선사와 협의

○ 일별 연안 운송 실적 파악 및 연안해송·철송 활용 독려

○ 부두내에서만 운행가능한 Y/T 차량의 부두밖 항만도로 운행 추진

○ 부두간 환적을 위한 비상 컨테이너선 투입추진

○ 부산항 일반부두 운송책임제 추진

○ 전화,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운송거부 운전자 복귀 설득

③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 부두간 환적을 위한 비상컨선 투입을 위한 터미널별 소요물량 파악 및 소요 비용문제 검토

○ 선사의 기항 스케줄 변경사항 확인 등 선사동향 파악 강화

○ 필요시 기항의 불편을 겪는 선사에 대해 하역비용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선사(대리점)에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는 사장(이사장) 명의 서신 발송

○ 터미널운영사의 조치내용 종합 주관·관리

○ 터미널운영사, 기항선사 등 항만이용자 관리 강화를 통해 항만 신인도 회복 추진

○ 사태 수습 후 조속한 시일내 항만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 준비

대응조치 관련 참고자료

< 차 례 >

1. 항만별 운송업체별 화물연대 가입차량 추정(양식) ····· 53

2. 항만별 컨테이너차량 운행현황(양식) ····· 54

3. 항만별 화물장치율 및 일일반출입 현황(양식) ····· 55

4. 항만별 장기화물 현황 및 반출 실적(양식) ····· 56

5. 항만별 임시장치장 확보 현황(양식) ····· 57

6. 항만별 철도 수송 현황(양식) ····· 58

7. 항만별 화물장치 가능기간 추정(양식) ····· 59

8.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양식) ····· 60

9. 항만별 연안 컨테이너선 수송능력 현황(양식) ····· 63

10. 비상사태시 부두간 환적 투입 가용선박 현황(양식) ····· 64

11. 비상시 항만별 보호대상 시설(업체) 현황 ····· 65

12. 비상사태시 ○○청 및 ○○항만공사 업무구분(예시) ····· 69

13. 군 컨테이너차량 지원 신청서(양식) ····· 71

14. 군 컨테이너차량(운전인력) 인계인수서 ····· 72

15. 비상용 컨테이너 지역별 배치 및 관련 연락처(양식) ····· 73

16. 일일 상황보고 주요 양식 및 내용(예시) ····· 74

17. 운송거부자 복귀 설득을 위한 전화 호소문(예시) ····· 81

18. 운송 복귀 설득을 위한 전단지(배포용 예시) ····· 83

19. 파업 등 비상사태시 여수광양항 가능유지 일수 ····· 84

20. ○○ 집단행동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예시) ····· 85

21. 관계부처 공동 신문 광고문 등(예시) ····· 93

1. 항만별 운송업체별 화물연대 가입차량 추정(양식)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운송사등록차량		용차 (1일평균)	운송사 전망 동원 가능능력
			직영	위수탁		
합계	총계					
	화물연대 가입					
	가입율					

* 항만별 운송사 전망 동원가능능력 : 직영, 위수탁, 용차 관계없이 비상시 운송사별 동원 가능한 총 차량수의 합계

□ 직영차 : 차량 및 운전기사가 모두 운송사 소속인 경우

□ 위수탁차 : 차량은 회사소속·운전기사는 차량을 배분 받은 개인형태인 경우

□ 용차 : 협력업체(운송주선업체) 소속 차량 (지입차량 포함)

2. 항만별 컨테이너차량 운행현황(양식)

【'22.0.00. 00:00현재】

(단위 : 대)

구 분	컨테이너 보유차량 (대수)			운송 거부 차량(대수)			운송 거부 비율 (b/a)
	합계 (a)	가입	비가입	합계 (b)	가입	비 가입	
○○항							

3. 항만별 화물장치율 및 일일반출입 현황(양식)

【'22.0.00. 00:00현재】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반입 (C)	반출 (D)	금일 반출입 16시기준 (C+D)	전일 반출입 (16시)	평시 반출입량		
		금일 16시 (B)	전일 16시	금일 16시 (B/A)	전일 16시	평시					반입	반출	합계
○○항													
합계													

* 반입 : 게이트 반입(양하 제외), 반출 : 게이트 반출(선적 제외)
* 평시 장치율/반출입량 : 전년도 평균 장치율 및 게이트 반입·반출입량
* 금일 반출입량은 전일 16시 ~ 금일 16시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4. 항만별 장기 장치화물 현황 및 반출 실적(양식)

(단위 : TEU)

구분	경과화물 현황				반출실적
	1~14일	15~29일	30일 이상	합계	
○○항					
○○터미널					

※ 반출실적은 무료장치기간을 경과한 화물중 전일 16:00~금일 16:00까지 반출한 실적임

5. 항만별 임시장치장 확보 현황(양식)

【'22.0.00. 00:00현재】

(단위 : TEU)

구 분	면적 (㎡)	장치능력 (A)	장치량 (B)	장치율 (B/A)	여유장치량 (A-B)	비고
ㅇㅇ항						
기 확보(소계)						
ㅇㅇ						▸(소재지) ▸(연락처) ▸(기타) 이격거리, 포장/비포장 등
협의 중(소계)						
ㅇㅇ						▸(소재지) ▸(연락처) ▸(기타) 이격거리, 포장/비포장, 사용협의 진행사항 등

※ 공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에 소요되는 컨테이너 수송차량 및 포크리프트 상당량 고정배치 필요

※ 해당 면적의 약 40%는 하역장비 작업공간으로 소요되며 약 60%는 컨테이너 장치 가능(1TEU 소요 면적 : 6m × 2.5m / 3.4 = 4.5평)

※ 항만 인근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해운대 탄약부두 등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한 부지는 상황을 보아가며 활용

6. 항만별 철도 수송 현황(양식)

【'22.0.00. 00:00현재】

□ ○○항 일일 철도수송량

(단위 : 회, TEU)

구분	전일		금일		평시	
	운행횟수	수송량	운항횟수	수송량	일평균 운항횟수	일평균 수송량
합계						
○○역						
○○역						

□ ○○항 평시 철도수송량

(단위 : 회, TEU)

구분	합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운항횟수								
수송량								
○○역								
운항횟수								
수송량								

7. 항만별 화물장치 가능기간 추정 (양식)

(단위 : TEU, 일)

구 분	일일 평균 반출입물량 ①	비상시 수송 가능능력 ②	일일 未반출입 물량 ③(=①-②)	여유 장치량 ④	예상 화물장치 가능기간 ⑤(=④/③)
○○항					0.0일
○○항					0.0일

① **일일 평균 반출입물량** : 평상시 육상(화물연대 + 비화물연대 + 철도) 및 해상운송(연안선) 총계

② **비상시 최대 수송가능능력** : 비상시 육상운송(비화물연대 중 운송사 동원 차량 + 철도 + Y/T + 자가용 + 군위탁) 및 해상(연안선)운송 총계

④ **여유장치량** : 터미널 여유장치량(장치능력 - 장치량) + 임시장치장

8.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양식)

□ ㅇㅇ지방해양수산청 비상수송대책

◈ 집단운송거부시 수송차질 **물동량은 1일 ㅇㅇㅇ TEU**로 예상되며, 대체수송 수단 투입 및 항만장치능력 감안시 **ㅇㅇ일** 화물장치 가능

1 주요 동향 및 조치 현황

ㅇ

2 ㅇㅇ항 운영 현황

ㅇ **(물동량 현황)** ‘ㅇㅇ년 000**천TEU** 처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0.0% 증감(수출입 0.0%, 환적 0.0%, 연안 0.0% 증감)

ㅇ **(장치율 현황)** 전체 ‘컨’장치율은 ‘00.0.0일 **현재 00.0% 수준**이며, ㅇㅇ년 평균 대비 약 0.0% 포인트 증가/감소(‘ㅇㅇ년 평균 00.0 %)

< ㅇㅇ항 ‘컨’장치율 현황(‘00. 0월말) >

구분	화물장치율(%)		화물 반출입량(TEU)		운송사 운영차량 운행대수(대)	
	‘16년	’17.0월	‘16년	’17.0월	‘16년	’17.0월
부산항						

3 ㅇㅇ항 비상수송대책

ㅇ **임시 ‘컨’장치장 확보 : ㅇ개소 000TEU** 장치 가능

< 임시 ‘컨’장치장 확보 현황(‘22. 0월)>

임시 장치장소	면적(㎡)	적재능력(TEU)	비고
ㅇㅇㅇ			· 포장(0단적)
ㅇㅇㅇ			· 일부포장
합계			

○ **대체수송수단 확보**

- 비상용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항 : ○○대 / 경계단계)
-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해 **철도 열차 증편** 추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활용
- 터미널 내 운영 중인 **Y/T 차량**에 대한 도로운송 허용(경계·심각단계)

< 대체수송수단 >

구분		'16. 0월		비상시		증감		비고
		운행 대수	수송량 (teu)	운행 대수	수송량 (teu)	운행 대수	수송량 (teu)	
육상 운송	운송사 차량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야드트랙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철도	00	00량 (000teu)	00	00량 (000teu)	-	-	
	군위탁차량							
해상 운송	-							
합계								

<참고사항>

- ○○항 운송업체 운행대수(군소업체 제외) : 총 000대(현재 000대 운영 중)
- 차량번호분류결과 : 000대, 게이트 반출입건수 : 000건(차량1대당 반출입 0회)
- 차량 1회당 약 0TEU 수송, 평시 차량 1대당 0TEU 수송
- 비상시 수송량 : 000대×6TEU=21,960TEU

④ 집단행동시 화물장치 가능기간('22 0월 기준)

○ 항만장치장 능력, 대체수송수단을 총 가동할 경우, 화물장치 가능기간은 **00일**로 추정

구 분	일일 평균 반출입물량 (TEU)①	비상시 수송가능능력 (TEU)②	일일 未반출입 물량(TEU) ③(=①-②)	여유 장치량 (TEU)④	예상 화물장치 가능기간 ⑤(=④/③)
○○항					

* 여유장치량 : 터미널 여유장치량 ○○○ TEU + 임시장치장 ○○○ TEU

참 고 1 ㅇㅇ항 컨테이너화물 장치율 현황('22.0.0 현재)

(단위 : TEU, %)

구 분	화물 장치량 및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 능력 (A)	현재 장치량 (B)	현 장치율 (B/A)	평시 장치율	반입량 (C)	반출량 (D)	반출입 합계 (C+D)	평시 반출입량
ㅇㅇ터미널								
합계								

참 고 2 부산항 운송업체별 화물연대 가입차량 현황

(단위 : 대, %)

구 분		합계	운송사 등록차량		용차 (1일평균)	운송사 전망 동원가능 능력
			직영차	위수탁차		
합 계	총 계					
	화물연대가입					
	가입율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 운송사 전망 동원가능능력은 직영, 위수탁, 용차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시 동원가능한 총 차량수

9. 항만별 연안 컨테이너선 수송 능력 현황(양식)

구 분	선박수	적재량 ((TEU)	항차수	수송능력(TEU) (월, 편도)	최대 수송능력	
					항차	수송능력(TEU)

10. 비상사태시 부두간 환적 투입 가용선박 현황(양식)

구 분	선 명	적재개수	G/T	선 종

※ 용선료 : 일일 4200~5000$ (연료비 등 운항비 제외, 흥아해운)

※ 부선으로 작업시 선내요금적용이 아닌 중기 일용으로 지급하므로 하역비 대폭 절감 가능 (고려3001, 5001호)

11. 비상시 항만별 보호대상시설(업체) 현황

지역별 (항만별)	시설 또는 업체	물동량 (일)	위치(주소)	연락처	0000. 00월 화물연대 행위		
					내용	일시	차량/인원
부산 (051)	**컨테이너부두**						
	·자성대부두	4,738 TEU	동구 좌천동	630-8282			
	·신선대부두	5,523 TEU	남구 용당동	620-0350			
	·감만부두	3,102 TEU	남구 감만동	669-5835			
	·신감만부두	3,043 TEU	〃	630-3307			
	·우암부두	-	남구 우암동	-			
	·신항1부두(PNIT)	6,632 TEU	강서구 성북동	290-8131			
	·신항2부두(PNC)	11,770 TEU	〃	601-8165			
	·신항3부두(HJNC)	7,003 TEU	진해구 안골동	220-2381			
	·신항4부두(HPNT)	6,358 TEU	강서구 성북동	290-1741			
	·신항5부두(BNCT)	3,456 TEU	〃	290-8731			
	기타 부두						
	·1부두(북항)	-	중구 중앙동	463-8353	※ 컨테이너·잡화 부두		
	·2부두(북항)	-	중구 중앙동	463-8355			
	·7부두(북항)	-	남구 우암동	640-2232			
	·신항다목적부두	-	강서구 성북동	200-9211			
인천 (032)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860TEU	중구 축항대로	890-8810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	1,500TEU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24-1261			
	· ㈜E1컨테이너터미널	850TEU	중구 서해대로	880-2330			
	· 대한통운남항부두(주)	400TEU	중구 내항로	770-5176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1,000TEU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202-4940			
여수, 광양 (061)	· 여수산단입구 (한국산업단지공단)	15천톤	여수시 주삼동	070-8895-7991			
	· 광양 컨부두	4천TEU	광양시 도이동	797-4473, 4481			
	· 현대하이스코	7천톤	순천시 해룡면	720-4144, 4177			
	· 포스코, 한라, 동양시멘트 등	14천톤	광양시 태인동	790-5737			
울산 (052)	· 유엔씨티(주)	678TEU	남구 용연로	270-2007			
	· 정일울산컨터미널(주)	403TEU	울주군 온산읍	239-8311			

지역별 (항만별)	시설 또는 업체	물동량 (일)	위치(주소)	연락처	0000. 00월 화물연대 행위		
					내용	일시	차량/인원
평택 (031)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PIRT)	1050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동부두)	650-5300			
	기아자동차부두	2500대		682-0897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PCTC)	1000개		617-9701			
	평택항만(주)(PTOC)	5,890톤		612-0910			
	유성TNS	5,500톤		070-7890-5107			
	평택동방아이포트(주)(PNCT)	430TEU		8053-5032			
	평택국제 동방 여객터미널 대아항운	-		8054-7347			
		551TEU		683-9310			
당진 (031)	한일시멘트(주)	2,900톤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	683-0460			
	영진글로벌(주)	5,000톤		681-1373			
	현대시멘트(주)	2400톤		683-3673			
	평택당진중앙부두(주)	2500톤		684-9211			
	㈜평택당진항만	160톤		683-7421			
	㈜태영그레인터미널	7500톤		8053-2132			
당진 (041)	현대제철(주)	21,200톤	송악읍 고대리	680-1545			
	동부제철(주)	12,000톤	송악읍 한진리	351-8200			
	당진항만(주)	1670톤		357-5300			
	당진고대부두운영(주)	1670톤		351-4767			
	동국제강(주)	2500톤		351-4613			

지역별 (항만별)	시설 또는 업체	물동량 (일)	위치(주소)	연락처	0000. 00월 화물연대 행위		
					내용	일시	차량/인원
포항	· 현대제철(주)	14천톤	남구 송내동	271-1233			
	· 포스코	7천톤	남구 괴동동	220-3154			
	· 동국제강(주)	8천톤	남구 대송면	271-5274			
	· (주)세아제강	8백톤	남구 장흥동	271-4170			
	· (주)경한	4백톤	남구 대송면	278-6505			
	· CJ대한통운(주)	12천톤	남구 괴동동	278-1695			
	· (주)한진	12천톤	남구 송내동	289-5532			
	· 세방기업(주)	6백톤	남구 연일읍	285-7697			
	· (주)동방	3천톤	남구 괴동동	289-1500			
	· (주)삼일	2천톤	남구 괴동동	278-5262			
	· 포항영일신항만(주)	250TEU	북구 흥해읍	250-8150			
마산	· 한국철강(주) 창원공장	3.5톤	창원시 신촌동	260-0560			
	· 동양시멘트	2.5톤	"	264-2101			
	· 쌍용시멘트	4천톤	창원시 귀곡동	221-1501			
	· 한라시멘트	3.5천톤	창원시 귀곡동	264-5181			
	· 컨테이너부두 (제4부두)	180TEU	창원시 신촌동	244-0893			
목포 (061)	· 대한통운(주)		영암군 삼호읍	469-2410			
	· 세방(주)		"	462-8167			
	· (주)동방		"	464-0215			
	· 신광해운(주)		"	462-3300			
	· (주)금영		"	464-6600			
	· 목포신항만(주)		목포시 달동	460-8034			
	· 목포국제자동차 부두(주)		"	462-0118			
군산	· CJ대한통운(주)	45천톤 32TEU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7부두내)	460-7000			
	· 세방(주)			447-7652			
	· 한솔CSN(주)			467-4371			
	· (주)동방			464-7042			
	· GCT(주)			461-7379			
	· (주)선광			463-2512			
	· 군산항7부두운영(주)			464-6792			
	· 군장신항만(주)			464-6841			

지역별 (항만별)	시설 또는 업체	물동량(일)	위치(주소)	연락처	0000. 00월 화물연대 행위		
					내용	일시	차량/인원
동해 (033)	북부두 25번석 야적장 / 씨제이대한통운㈜	119톤	동해시 송정동	740-8680			
묵호 (033)	비산탄상옥 / 코레일유통㈜ 동해본부	백운석 철광석 유·무연탄 5,450톤	동해시 발한동	070- 7092- 7194			
대산 (041)	제1부두 / 국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63-9928			
	제2,3,4부두 / 대산항만운영(주)	5,349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62-2161			

12. 비상사태시 ○○청 및 ○○항만공사 업무구분(예시)

〈 기 본 방 향 〉

◈ 원활한 항만물류를 저해할 수 있는 비상상황의 발생 시에는 해양수산부(본부)의 판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청)에서 위기 대응업무를 총괄**

◈ **○○항만공사**에서는 ○○청의 관리·감독 하에 **터미널운영사의 자체 대응 독려, 게이트 반출입율 등 관련자료의 취합, 각종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청 업무 범위	○○항만공사 업무 범위
○ 위기 상황 발생시(또는 발생 징후 포착시) 비상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지방청 주관으로 구성 - PA는 비상대책본부의 일원으로 참여 ○ 비상대책본부 및 위기대응과 관련된 제반 조치의 결정 및 시행은 ○○청에서 총괄 - 국방부 위탁 여유 컨테이너차량(128대)의 소요 파악 및 각 운송사 배분, 조정 등 - 경찰청 등과 협조로 운송방해행위의 사전 차단, 주요 요소에 경찰인력 배치, 차량기사의 조기 복귀 설득 조치 등 - 장기 적체화물의 반출, 임시장치장 지정 및 반출, YT 차량의 부두 밖 운행 등 - 터미널운영사, 운송사 등의 각종 요구 및 애로사항 해결 등 ※ 운영사 동향파악 및 애로사항 접수·자체 해결 가능사항에 대한 해결은 일차적으로 항만공사에서 담당	○ ○○항만공사는 ○○청을 보조하여 각종 위기관련 대응책의 실제 수행, **선사별 동향 파악 및 제공** 등의 역할 담당 - ○○청 주관 비상대책본부에 **터미널 운영사 대표하는 역할로 참여** - 위기 대응관련 각종 추진 필요사항 및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 및 터미널 운영사 등에 추진 독려** - 터미널 **일일 운영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 확인 - 선사별 **기항지 변경동향 등 파악 및 선사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선사의 구체적 불편함 파악 및 해소 (결과 및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청에 보고) - 선사의 불편함을 상계할 수 있는 **비용 보전방안** 마련 (하역비용 감면, 선적지연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청 업무 범위	○○항만공사 업무 범위
- 일일 터미널 반출입 현황, 선박 양적하 현황, 주요 운송사 일일 운송현황 등 각종 정보의 최종 확인 및 언론사 배포 등 ※ 특히, 일일 현황 정보의 경우, 현황 정도에 따라 정부의 대응방침 수위 조절 등 파급효과가 막대한 관계로 ○○청이 정보 제공의 최종 창구가 되어야 하며, 사전에 타기관에 의한 관련자료의 유출 등은 철저히 배제 ※ 기자실 운영, 기자 브리핑 등도 ○○청에서 전담하여 수행 ○ 기타 각종 관련부처 및 외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 청와대, 국조실, 국정원, 건교부, 산자부, 국방부, 경찰청 등 대외기관과 관련된 업무 수행은 ○○청에서 일괄적 수행	- 항만 비상시 부두간 환적화물 등의 해상 이동 및 장기 장치화물의 부두밖 또는 임시 장치장 강제 이송비용 부담 ※ 현재 일반부두 환적화물을 소형 컨선을 이용하여 전용부두 등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일일 용선료 약 300만원 및 도선료 · 이송료 등 소요) ※ 강제 이송 실시여부는 ○○청이 결정(항만공사 협의)하고, 비용부담은 항만공사가 주관하여 터미널 운영사와 부담비율 등 결정

※ 항만공사가 설립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위 기준에 준하여 업무 분장 · 시행

13. 군 컨테이너 차량 지원 신청서(양식)

업 체 명			연락처	전화/팩스	/
담당자성명				핸드폰	
지원신청 차량(대)		지원신청 운전인력(명)			
운행구간					
지원기간	시작일시	.			
	종료일시				
차량인수 장소					

상기와 같이 군 컨테이너차량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소 속

성 명 인

OO항 비상수송대책본부장 귀하

14. 군 컨테이너차량(운전인력) 인계인수서

장 비 명차량(운전인력)	장비번호(성 명)	비 고
차량 운행에 따른 책임관계		

상기 차량(운전인력)을 정히 인수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소 속

성 명 (인)

인수자 : 소 속

성 명 (인)

15. 비상용 컨테이너 지역별 배치 및 관련 연락처(양식)

(단위 : 대)

지역별		부대명	관 리 차량수	투입 지역	관 리 부 서	
					담당과	연락처
합계			128			

※ 부산항 투입대수 : 83대, 광양항 투입대수 : 5대

16. 일일 상황 보고 주요 양식 및 내용(예시)

주요 동향 (0. 00. 12:00～24:00)

○ 운송사측은 0. 00(월)까지 업무 미복귀시 계약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의 서신을 운송거부 운전자에게 발송

- 운송사별로 운송거부 운전자에 대한 개별방문 등 복귀 독려중
- 이에 대해 화물연대측은 각 지회별 모임을 통해 회원단속강화 조치
- 운송사측은 화물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00%의 운임인상 즉시 실시 방침

○ 민주노총 부산지부 집회(14:00~16:40)에 화물연대 회원 400명을 포함한 700여명 참석

- 계속적인 운송거부 투쟁과 단결을 강조하고 폭력적 방법의 투쟁 자제요청

○ 00. 00. 22:00 현재 항만운영 및 차량 운영상황

- 야적장 장치율 61.4% (00일 12:00 현재 59.2%),
- 반출입량 일일평균 62.6 % (00일 12:00 현재 68.9%)
  · 수출입 화물은 평시대비 64.7%, 환적화물은 58.6%
- 우암 및 자성대 터미널에 접안중인 10척의 양·적하 현황을 분석결과 3척의 선박 적하량 계획대비 미달 (76%~94%)
- 가용차량은 평시 운용차량의 40.5% (00일 12:00 현재 928대 40.7%수준)인 960대로서 운송거부 사태후 처음으로 소폭 증가

주요 조치사항 (0. 00. 12:00～24:00)

○ 공컨테이너 임시장치장 사용결정

- 해운대 수영부두내 탄약부두 부지 : 약 10,000평/8. 23 오후부터 사용가능

- 해운대 센텀시티 부지 : 약 1,400평/8. 25부터 사용가능

○ 운송업체 위수탁 차주 1,061명에 대하여 청내 사무관급 간부 복귀 호소 전화 실시중 : 00. 12:00시까지 완료계획

○ 화물연대 회원에 대한 지자체 장 명의 서한발송 (800통)

○ 지자체 등 11개 기관 공동명의의 대시민담화문 (00신문에 게재) 발표

○ 불법주차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주간단속 : 시·구·군 직원 및 경찰관 368명 (07:00～17:00)

- 야간 차고지외 단속 :시·구·군 직원 및 경찰관 232명 (07:00～17:00)

○ 주요 수송로, 항만, 톨게이트 등 총 39개소 294명 경찰배치

- 수송로 16개소, 항만 6개소, 화주사 10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IC 7개소

○ 5개 운송사에 20대의 트레일러 지원 267TEU 수송

터미널별 화물장치율 및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00. 00일 00:00 현재)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 능력 (A)	장치량		장치율(%)			반입 (C)	반출 (D)	금일 반출입 16시기준 (C+D)	전일 반출입 (16시)	평시 반출입량		
		금일 16시 (B)	전일 16시	금일 16시 (B/A)	전일 16시	평시					반입	반출	합계
○○ 터미널													
합계													

* 반입 : 게이트 반입(양하 제외), 반출 : 게이트 반출(선적 제외)
* 평시 장치율/반출입량 : 전년도 평균 장치율 및 게이트 반입·반출입량
* 금일 반출입량은 전일 16시 ~ 금일 16시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접안예정 선박별 컨테이너 양·적하 현황 (00. 00. 00:00~00.00 00:00) (예시)

(단위 : TEU)

터미널명	선박명	당초계획		실 적		비 교	
		양하(A)	적하(B)	양하(C)	적하(D)	A-C	B-D
신선대부두	NSIM-03	85	289	85	289	0	0
	CAJG-05	1,261	206	1,261	188	0	18
	CSQD-02	245	927	245	927	0	0
	AHDT-02	152	149	152	149	0	0
자성대부두	KHCM 01	0	474	0	463	0	11
	KHXC 01	486	186	486	171	0	15
	HHHW 06	524	1,089	524	1,089	0	0
	KSPM 14	108	0	108	0	0	0
	KSOL 01	0	86	0	80	0	6
감만부두	한진월밍톤	9	164	9	164	0	0
	HHRP14	503	2,407	503	2,395	0	12
	SAFMARINE IBHAYI	1,086	1,016	1,086	1,016	0	0
신감만부두	COAC-31	660	145	660	145	0	0
	CENA-06	79	237	79	237	0	0
	WHHC-09	212	295	212	295	0	0
	WATR-25	35	200	35	180	0	20

주요 운송업체 가용 차량 운행 현황 (00. 00. 00:00) (예시)

(단위 : 대수)

구 분	일일평균 가동차량			현재 가용가능차량						가동율(%)		
				계(B)				셔틀	장거리	계(C=B/A)	셔틀	장거리
	계(A)	셔틀	장거리	0.00 (18:00)	0.00 (12:00)	0.00 (22:00)	0.00 (12:00)					
합 계	2,368	755	1,613	1,055	1,334	1,334	1,375	542	833	58.1	71.8	3.6
세방기업(주)	250	80	170	81	147	151	151	66	85	60.4	82.5	35.5
대한통운(주)	380	100	280	307	320	325	325	100	225	85.5	100	30.5
(주)KCTC	290	110	180	97	119	124	138	69	69	47.6	62.7	26.4
(주)동방	110	45	65	51	87	90	96	45	51	87.3	100	134.3
국제통운(주)	370	100	270	295	300	303	306	94	212	82.7	94.0	30.6
동부건설(주)	205	40	165	45	150	150	150	43	107	73.2	107.5	44.4
(주)한진	210	100	110	134	90	70	87	45	42	41.4	45.0	37.6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225	65	160	25	66	66	72	46	26	32.0	70.8	20.0
(주)국보	246	96	150	12	45	45	40	25	15	16.3	26.0	10.9
(주)천경콘테이너터미널	82	19	63	8	10	10	10	9	1	12.2	47.4	19.4

※ 금일 12:00(58.1%)는 전일 22:00(56.3%) 대비 1.8%(42대) 증가함.

※ 차량대수는 자차, 위수탁, 용차를 합한 대수로서 파악시간 현재 도로운행차량과 운송업체에서 가용한 차량을 합한 개념(예 : 철야 후 대기 차량)으로 각 운송업체의 추정치임

대체 운송수단 운영 현황 (00. 00. 00:00) (예시)

□ 철도수송 현황

구 분	0. 00 (22:00)	0. 00 (12:00)	0. 00 (22:00)	비 고
투입편수	22	23	21	
차 량 수(량)	451	450	448	
운송수량(TEU)	992	993	986	

※ 각 수치는 기준시점 24:00전부터 기준시점까지의 누계수치

□ 군 트레일러 투입현황

구 분	0. 00 (14:00-19:00)	0. 00 (12:00)	0. 00 (12:00-18:00)
투입차량	15	20	20
운송수량(TEU)	56	72	195

※ KCTC 5대(50TEU), (주)한진 5대(70TEU), (주)국보 5대(16TEU),세방터미널 2대(32TEU), 동부건설 3대(27TEU) 각각 투입됨.

통행료 면제비표 및 카드 발급 현황

	0. 00 22:00	0. 00 12:00	0. 00 22:00			
업체수	6	22	31			
매수	147	1,756	985			

※ 상기 수치는 기준시간부터 이전 기준시점까지의 수치임

경찰 인력 배치 현황 (예시)

□ 수송로 배치현황 : 16개소 88명

- 동서고가로, 농산물도매센터 앞, 만남의 광장, 안락로터리, 내성로터리, 남문구로터리, 사직로타리, 서면로터리, 범천로터리, 반여동, 기장체육관, 미남로터리, 금곡지하철역, 구포대교서쪽, 구포대교동쪽, 동래로터리

□ 항만 배치현황 : 6개소 77명

- 자성대부두, 3부두, 4부두,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감천부두

□ 화주사 배치현황 : 10개소, 64명

- 동국제강, (주)한진, 한국특수형광, 동부제강, 한국선재라인스틸, 화물터미널, 천일정기화물, 한국주철관, 성창기업

□ 고속도로 톨게이트, IC : 7개소 65명

- 원동IC, 경부TG, 서부산TG, 북부산TG, 대저IC, 명리IC, 덕천IC

□ 총 39개소 경찰인력 294명 배치

※ 경찰배치장소는 전일과 동일하며 인원만 3명 증가

17. 운송거부자 복귀 설득을 위한 전화 호소문(예시)

【 본인인 경우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시・도)의 ○○○사무관입니다.

○ ○○○ 선생님이십니까?
요즈음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죠

○ ○○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금번의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 ○요일까지 일을 나가시지 않으시면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복귀하신다면 선생님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 물건은 없는데 화주나 소속 운송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새로운 회사를 물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운행을 안하실 경우 보험료, 할부료 부담도 가중될 것이고,
그 동안 받고 계시던 유가보조금도 6개월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운송거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와 위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동안 쌓아온 우리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 제발 ○○항(○○지역)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운행에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을 하시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또한, 피해를 적극 보전해 줄 것입니다.

○ 또한 저희 ○○부(○○시・도)를 비롯한 정부도 운송종사자의 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렇게 전화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선생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인 경우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시·도)의 ○○○사무관입니다.

○ ○○○ 선생님 사모님 되십니까?
요즈음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죠.

○ ○○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화물차의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사모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 ○○○선생님께서 ○요일까지 일 나가시지 않으시면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복귀하신다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원 물건은 없는데 화주나 소속 운송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새로운 회사를 물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운행을 안하실 경우 보험료, 할부료 부담도 가중될 것이고,
그 동안 받고 계시던 유가보조금도 6개월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 가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 사모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운송거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와 위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동안 쌓아올 우리경제는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 제발 ○○항(○○지역)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조속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운행을 하시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 또한 저희 ○○부(○○시·도)를 비롯한 정부도 운송업체 종사자의 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도 정부에서 적극 보전할 것입니다.

○ 이렇게 전화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8. 운송 복귀 설득을 위한 전단지 (배포용 예시)

운송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지금 우리 항만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땀 흘려 쌓아올린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도, 동북아 물류중심항을 지향하는 우리의 꿈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 운송거부 운전자 여러분! 현재의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하는 공멸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현업복귀만이 현재의 국가 경제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송 복귀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송에 따른 혜택】

복귀시 혜택	미복귀시 불이익
운송료 인상 00000원	운송료 인상, 도로통행료 면제 혜택 없음
유가보조금 정상 지급 00000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부산시내 통행료 면제 0000원	계약해지로 일자리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00000원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9. 파업 등 비상사태시 여수광양항 가능유지 일수

(감사원 및 KMI 추정)

구 분		기능 유지 일수
시나리오	수송기능 확보율(%)	
항만 출입구 봉쇄	0	8.2일
셔틀 수송만 가능 (부두↔ODCY)	30	9.1일
	50	10.7일
	100	11.2일
셔틀 수송만 가능 (부두↔ODCY 및 비상야적장)	30	9.1일
	50	10.7일
	100	19일
셔틀 및 내륙수송 가능	30	10.2일
	50	13.5일
	80	26.7일

20. 0000 집단행동에 따른 對 국민 담화문(예시)

<관계부처 공동 담화문-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0000가 또 다시 집단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0000와 '08년도에 약속한 5개 사항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을 완료하였으며, 표준운임제 도입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법제화는 '11년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08 유가급등으로 고통받는 화물차주들을 위해 '08년부터 '09년까지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1,800원/ℓ 초과 상승분의 50%, 569억원 추가)하고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증 대상을 확대(10톤 이상 11만대에서 모든 화물차 306만대, 388억원 추가)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표준운임제"과 관련하여서는 도입 원칙에는 이의가 없으나 0000의 "차주수령운임 보장", "위반시 화주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지극히 반 시장적이며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 수용성도 매우 낮은 요구에 대해 의견의 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려운 화물차주들을 위해 대형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에게 유가연동 적용 등 운임인상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주에게는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345.54원씩 매년 약 1조5천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각종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0000는 '08년에 이어 또 다시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 행위를 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0000의 집단적 운송거부행위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요 항만의 운영을 마비시키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라는 국가 발전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을 줄 경우 정부는 6개월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컨테이너·BCT 연간 최대 1,786여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및 미복귀시 형사처벌, 사업허가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모든 민·형사·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이번 0000의 집단행동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정부는 국가의 물류동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내에는 정부종합상황실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이미 가동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등 각 지자체에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화물차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지역의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000. 00. 00

법 무 부 장 관　　0 0 0
행정안전부장관　　0 0 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0 0 0
국토교통부장관　　0 0 0
해양수산부장관　　0 0 0

<관계부처 공동 담화문-②>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對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합리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 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송방해·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방화나 손괴, 운송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전자 여러분!

화물연대의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경기회복과 여러분의 생업 종사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화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운행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0

법무부 차관 ㅇ ㅇ ㅇ
행정자치부 차관 ㅇ ㅇ ㅇ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ㅇ ㅇ ㅇ
고용노동부 차관 ㅇ ㅇ ㅇ
국토교통부 차관 ㅇ ㅇ ㅇ
해양수산부 차관 ㅇ ㅇ ㅇ

<국무총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0000가 집단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하여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운송업체의 물동량 확보 의무화, 다단계 운송체계의 개선, 위수탁·지입차주 권리 보호 등 화물운송산업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08년 0000와 약속한 5개 사항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유가급등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을 완료하였으며, 표준운임제 도입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주에게는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345.54원씩 매년 약 1조5천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각종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08년에 이어 또 다시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 행동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0000가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을 줄 경우 정부는 부득이 6개월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컨테이너·BCT 연간 약 1,786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및 미복귀시 형사처벌, 사업허가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모든 민·형사·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이번 0000의 집단행동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부는 국가의 물류동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내에는 정부종합상황실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이미 가동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등 각 지자체에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차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지역의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000. 00. 00

국 무 총 리 0 0 0

21. 관계부처 공동 신문 광고문 등 (예시)

0000의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0000년에 0차례에 걸쳐서 발생한 물류대란을 기억하십니까? 수출입 마비로 부산항에 쌓여있던 컨테이너, 연일 계속되는 외신들의 부정적 기사, 국가경쟁력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기억하십니까?

'00년 물류대란의 주범이었던 0000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에 0000의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08년 이후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09년 유류가격 안정시 까지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569억원)하고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증 대상을 확대(388억원 지원) 한 바 있으며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위해 '11년 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하는 등 각종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주에게는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345.54원씩 매년 약 1조5천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0000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행동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물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0000년 00월 00일

법 무 부 장 관 0 0 0
행정안전부장관 0 0 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0 0 0
국토교통부장관 0 0 0
해양수산부장관 0 0 0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하여 차주님과 운전자님께 드리는 안내문

첫째, 정부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정부 피해보상 지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경찰관 동승 및 경찰차량 에스코트를 실시하고 육군항만수송단에서도 군 지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와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6개월간)합니다.

넷째, 금번 집단운송거부 사태 종료 시 까지 운행하는 '컨'화물차량에 대해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할) 및 부산시내 유로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긴금운송(반입·반출)화물운송을 위하여 개별 화주와 화물차량 및 운전기사를 연계하는 대책반(여수광양항만공사 061-797-4480)을 24시간 가동합니다.

<각 분야별 지원요청 부서 전화번호>

☏ 여수광양항 비상대책본부 061-650-6056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 061-797-4480(재난안전실)
061-797-4420(물류전략실)
061-797-4440(물류단지부)

☏ 경찰관 동승 문의 112

☏ 군차량 운행 문의 02-748-6141

☏ 광양시 안전총괄과 061-797-2555

☏ 여수광양항 항만물류협회 061-797-6550

☏ 전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62-528-8501

정부에서는 원활한 부산항 물류흐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I 광양시 I 여수광양항만공사

Ⅴ. 위기 유형별 조치 및 절차

V. 위기 유형별 조치 및 절차

1. 전국적 범위 컨테이너 화물차 집단 운송거부 지속

가. 상 황

□ 개요

0000년 00월 00일 부산 등 주요항만에서 시작된 컨테이너 화물차의 국지적 운송거부가 전국적 운송거부로 확산되고 상황이 지속되어 수·출입 화물운송 차질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집단운송 거부 내용

o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이후~00월 00일 현재까지

o 장소 : 부산, 광양, 인천, 울산, 평택 등 주요 항만

o 참여인원 : 0000명

o 참여차량 : 컨테이너 0000대

□ 언론보도 내용

o 0000 소속 컨테이너 운전자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입 화물운송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물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나. 조치사항 및 절차

①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성황 접수·전파 및 평가	o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o 관련 동향 종합 분석	o 해수부(비상대책본부 / 항만물류기획과)
대응조치 시행	o 국토부(중앙수송대책본부) 중심 범정부 상황 종합관리 강화 o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가정책조정회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범정부 위기관리 대응체계와 공조 o 정부관련기관, 산하소속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간의 협조관계 강화 o 대체수송수단 적극 투입 등을 통해 항만물류의 지속성 확보 o 대 국민 및 외국적선사 홍보활동 강화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복구(수습)	o 우리나라 항만이탈 선사 현황 파악 o 항만 신인도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o 사태대응시 발생한 미비점 분석·평가 o 항만당국, 항만이용자 단체 등과 항만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② 조치 내용

[대응조치 관련]

□ 관련 동향 접수・수집, 관련기관에 전파・공유(항만물류기획과,지방청)

○ 관련기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파악된 정보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실시간 공유

○ 해운・항만 분야 종사자 관련 동향 모니터링 강화

□ 범정부 대응방안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적극 협조(항만물류기획과)

○ 운송거부자 명단 확인 및 복귀설득, 비회원 차량 운송 참여 권유, 대체수송차량 운송행위 지원 등

□ 대체 수송수단/인력의 투입확대 등 비상수송대책 강화(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적극 이용

○ 비상용 군 컨테이너 차량 및 인력 투입

- 항만별 비상수송위원회에 업체별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
- 군부대로부터 인수받은 컨테이너 차량을 CY 적체율 해소,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 등에 우선 활용

○ 연안해상 수송능력 확대

- 정기 연안컨테이선 운송능력 확대 이외에 비컨테이선을 이용한 연안 컨테이너 운송능력 증대
- 필요시 부산↔인천간 연안컨테이너 운송을 외국적 선사에 허용 조치

○ 철도운송 능력 확대

-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열차 운송 증편

□ 임시장치장 확보·이용 등으로 항만장치능력 확대 추진(지방청, 항만공사)

○ 컨테이너 장치장 단적수 상향 조정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터미널운영사에 기존의 3.5단을 4~4.5단으로 상향 조정토록 요청

○ 임시장치능력 확대 추진

- 항만주변 임시장치장을 활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비상 장치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항만주변 부지에 공컨테이너 긴급 임시장치

□ 부두간 운송 효율성 제고 추진(지방청, **항만공사)**

○ 터미널 운영사에 광양항 일반부두 접안 예정선박을 컨테이너 터미널 여유선석으로 전배 협의

○ 부두내 전용 Y/T 차량의 부두밖 항만도로 이용 협의 및 요청

○ 선사 및 선주협회 등에 광양항 입항예정 선박의 일정조정 및 다른 항만으로 전배 요청

□ 정부의 해운항만분야 조치 및 대처 노력 홍보 강화(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 정부의 철저한 대응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적극 홍보

- 오보 등 문제보도에 대응을 강화하고, 파문여지를 적극 차단

[복구(수습)조치 관련]

□ 항만물류 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피해발생 여부 파악(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 관련기관 공동으로 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자체적인 실태 확인을 병행

○ 항만별로 항만시설 피해현황 및 이탈선사 현황 파악

□ 항만 신인도 회복 추진(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항만공사**)

○ 관련기관 공동으로 국가물류기능 정상화 선언

○ 정부의 물류기능 회복 노력 및 국민협조, 대체수송 수단과 인력의 투입효과,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관련기관과 전개

○ 지방청장이 주관하여 항만이용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만의 조기 정상화 및 활성화 노력 협조 요청

□ 운송거부 사태 대응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항만공사**)

○ 각 항만별로 **대응시 나타난 문제점 발굴**

○ 항만물류 위기대응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① 항만물류기획과 / 비상대책본부

[대응조치 관련]

□ 동향관리 강화 및 관련기관간 협력 강화

○ 관련 동향 접수·수집, 관련기관에 전파·공유

○ 범정부 대응방안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적극 협조

□ 비상수송대책 강화

○ 부산↔인천간 연안컨테이너 운송 외국적 선사에 허용 검토

□ 정부의 해운항만분야 조치 및 대처 노력 홍보 강화

[복구(수습)조치 관련]

□ 항만 신인도 회복 추진

○ 관련기관 공동으로 국가물류기능 정상화 선언 등

□ 항만물류 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피해발생 여부 파악

□ 운송거부 사태 대응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②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비상대책본부)

○ 대체 수송수단/인력의 투입확대 등 비상수송대책 강화

- 비화물연대 차량 이용, 비상용 군컨테이너 차량 투입, 연안해송 확대, 철송운송 증대 등

○ 임시장치장 확보·이용 등으로 항만장치능력 확대 추진

- 컨테이너 단적수 상향 조정, 임시장치장 확대 추진 등

○ 부두간 운송 효율성 제고 추진

- 터미널간 선박 전배협의, YT차량 부두밖 운행 허용 협의 등

○ 해당 항만의 피해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

③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 입항 선박 부두간 **전배 및 조정 협의** 추진(지방청과 협조)

○ 기항선사 **불편사항** 파악 및 **인센티브 제공** 추진

○ **항만피해 및 선사이탈 현황 파악**, 지방청에 제출

○ 항만의 정상적 운영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운영사, 기항선사 등 **항만이용자 관리 강화**

○ **선사이탈 현황 파악**, 지방청에 제출

2. 전국적 범위 BCT 화물차 집단 운송거부 지속

가. 상 황

□ 개요

0000년 00월 00일 제천 등 주요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시작된 BCT 화물차의 국지적 운송거부가 전국적 운송거부로 확산되고 상황이 지속되어 00일째 BCT 화물 운송이 안 됨에 따라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집단운송 거부 내용

o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이후~00월 00일 현재까지

o 장소 : 제천/단양 등 주요 시멘트 생산지 일원, 주요 항만

o 참여인원 : 000명

o 운송거부 참여차량 : BCT 차량 000대

□ 언론보도 내용

o 0000 소속 BCT 차량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BCT 화물운송 차질이 발생하여 건설자재 부족 사태가 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 조치사항 및 절차

①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성황 접수·전파 및 평가	o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o 관련 동향 종합 분석	o 해수부(비상대책본부 / 항만기획물류과)
대응조치 시행	o 국토부(중앙수송대책본부) 중심 범정부 상황 종합관리 강화 o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가정책조정회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범정부 위기관리 대응체계와 공조 o 정부관련기관, 산하소속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간의 협조관계 강화 o 해상수송 확대 투입 등을 통해 항만물류의 지속성 확보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복구(수습)	o 사태대응시 발생한 미비점 분석·평가 o 항만이용자 단체 등과 항만운영의 안정성 강화 o 항만신인도 회복을 위한 홍보 강화	o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 o 지방청 o 관련기관

② 조치내용

[대응조치 관련]

□ 관련 동향 접수·수집, 관련기관에 전파·공유(항만물류기획과,지방청)

○ 관련기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파악된 정보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실시간 공유

○ 해운·항만 분야 종사자 관련 동향 모니터링 강화

□ 범정부 대응방안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적극 협조(항만물류기획과)

○ 운송거부자 명단 확인 및 복귀설득, 비회원 차량 운송 참여 권유, 대체수송차량 운송행위 지원 등

□ 동해지역 양회회사 생산물량의 해상수송 극대화 방안 모색(지방청)

○ 동해지방청 소관내 1일 시멘트 해상 운송 현황 점검 및 해상 수송능력 확대 방안 강구

□ 정부의 해운항만분야 조치 및 대처 노력 홍보 강화(항만물류과, 지방청)

○ 정부의 철저한 대응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적극 홍보

- 오보 등 문제보도에 대응을 강화하고, 파문여지를 적극 차단

[복구(수습)조치 관련]

□ 항만물류 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피해발생 여부 파악(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 관련기관 공동으로 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자체적인 실태 확인을 병행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시멘트 해상운송 능력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 강화(항만물류기획과, 지방청)

□ 관련기관과 협조, 동해지구 양회회사 생산 물량 해상수송 극대화 추진(동해청)

○ 해상수송 능력 확대를 위해 양회회사와 선사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

○ 동해항 비상수송위원회 운영을 통해 동해항 이용, 해운수송 지원

○ 비상시 시멘트 해상수송 확대능력을 점검하고 추가 확대 추진

항만	이용업체	평상시 처리 현황		비상시 확대 (천톤/주)	비고
		이용선박 (척/주)	처리물량 (천톤/주)		
계	3개사	43.3	308.6	379	비상시 척수는 평시와 동일
동해항	쌍용양회	14	100	128	
	동양시멘트	0.8	5.6	23	
묵호항	쌍용양회	2	6	6	
삼척항	동양시멘트	15.5	109	134	
옥계항	한라시멘트	11	88	88	

○ 항만 이용업체(양회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상수송의 원활화 추진

□ 기타사항 중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절의 관련내용에 준하여 조치(관련 지방청)

부 록

< 차 례 >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107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121

3.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129

4. 위기 유형별 사례 및 관련 일지 ····· 131

5.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시 국교부-해수부 업무협력 방안 ··· 136

6.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 관련 업무협약서(국교부-국방부) ···· 138

7. 관련기관 연락처 ····· 143

8.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152

9.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 체계 ····· 167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목표

○ 정부가 위기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기본 원칙

○ 신속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일관성 :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ㅇ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 ㅇ 피해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ㅇ 언론사 현황 및 기자 명단 확보 ㅇ 타 부처 위기상황 전파 등 협업가능 SNS 매체 파악
		ㅇ 온·오프라인 위기징후 파악 및 상황 분석 ㅇ 위기 유형과 단계별 전파가 필요한 콘텐츠 점검과 준비 ㅇ 피해발생 예상 시 예방요령 온라인 홍보 전개
위기(crisis)	위기발생	ㅇ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 위기 비상체제 가동 여부 결정 -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본부 설치 여부 결정 - 응급임무 부여/ 비상근무 개시
		ㅇ 여론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현황 점검 - 온라인 여론동향 파악 및 SNS 대응현황 점검
		ㅇ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위기단계		점검사항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 위기 언론대응 - 기자 연락 -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 보도자료 배포 및 재난보도준칙 공유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 재난안전 전문가 풀(pool) 공유 등
		○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 SNS 활용 위기상황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전파 - 공식 브리핑자료 활용
		○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위기 후 (post-crisis)		○ 결과 브리핑 - 온·오프라인 전파·확산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온·오프라인 여론 분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 회복 프로그램 - 상황관리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세부내용 전파 - 내부 조직원 결속 프로그램 가동 - 대외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 세부사항 전파 - 언론사 및 주요 관계자에게 감사서신 발송 - SNS 활용 재발방지 약속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

□ 대변인 지정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각 대변인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며 1, 2, 3 순위를 미리 정해둠

○ 대변인 지위와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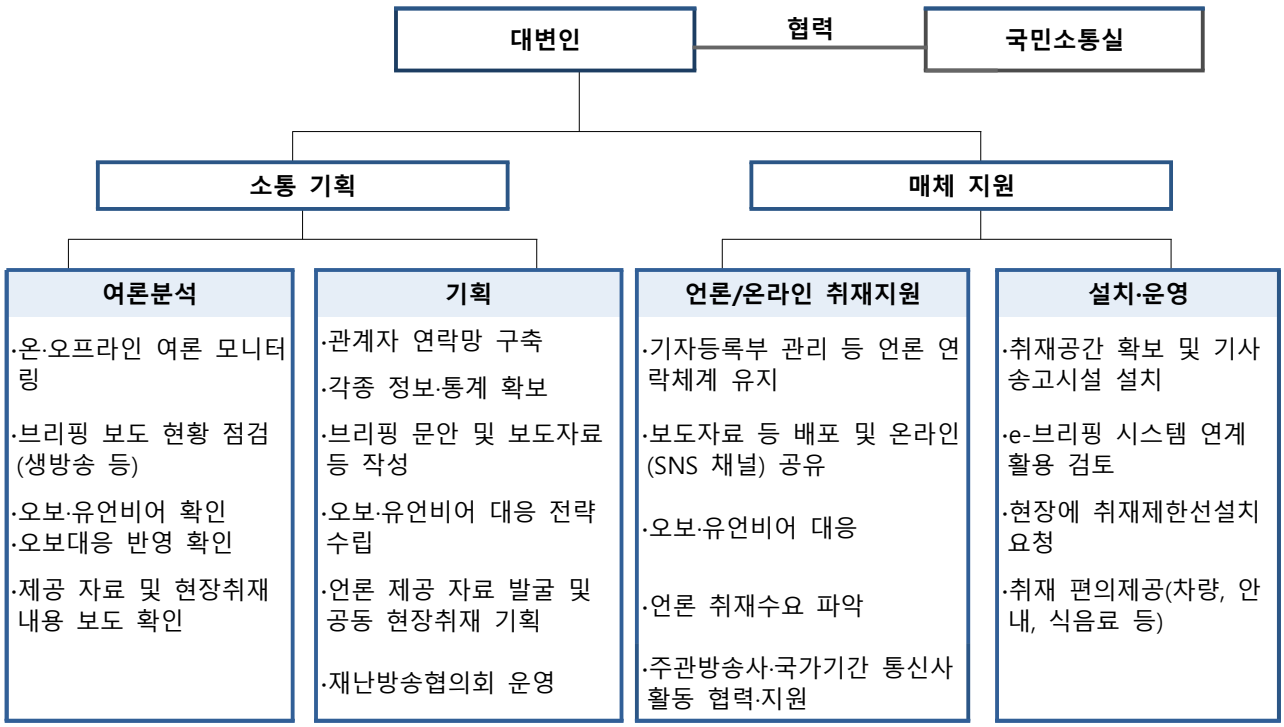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ㅇ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ㅇ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보유매체 활용 및 범부처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지원,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 취재제한선 조율 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가한다.

-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 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재난현장 관할 지자체(시·군·구) 홍보담당자를 반드시 포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핫라인을 통한다.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정체 홍보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거짓 정보 등을 초기에 발견·정리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해명하여 소멸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자료 배포)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언론에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 충족시켜야 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식 온라인채널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의 대응상황과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브리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어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해당 기장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에도 해명 글을 게재하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한다.

○ 특히 실시간 파급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와 동영상 형태의 행동요령 콘텐츠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이재민 임시구호소 등에도 취재제한선을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들은 취재기자 리스트에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소)

o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o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o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기능)

o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o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o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o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o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o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탬플릿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깃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 - 인구통계적 특성 - 피해규모(정도)	- 진행상황/사실 전달 - 집회/연설 등 - 현재 상황 설명 - 루머대응 - 미디어 응대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ㅇ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 -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 -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 -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 -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 -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 사과 및 책임감 표현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 관계 개선 노력 - 이미지 개선 노력	ㅇ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 -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 -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 ㅇ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ㅇ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 - 참여형 소통 방안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책임인 경우	ㅇ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 -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 -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 -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	ㅇ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ㅇ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문자 전송시스템(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요청

□ 표준문안예시

육상화물운송 분야	[해양수산부] ○○월 ○○일 ○○○○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예정, 육상화물 운송에 지장이 우려 됩니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해양수산부] ○○일○○시부터 ○○구간 차량운행통제,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바랍니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해양수산부] ○○일○○시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시멘트 수송용 차량의 통행료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해양수산부] ○○○○의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 긴급 재난문자 방송 서비스(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시 최대 60여자(2G)/90자*(4G, ' 18.12월부터 적용)

* 국제표준에 따라 4G는 한글·영어·공백·특수문자 모두 2Byte(총 180byte)

○ **(송출지역단위)** 시.군.구, 시.도, 전국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 발송 절차 >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송출절차

소관 부처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 요청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

이통사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CBS) 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 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해당 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기지국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시·군·구별로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230자 내외 문자 전송

⬇

국민(휴대폰 가입자)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외부망) : https://cbis.safekorea.go.kr

②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개 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 시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각 방송사	
재난정보	행망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행망	지상파방송정책과	인터넷망	방송통신위원회	①지상파방송사업자 ②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②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③위성방송사업자
				비상안전기획관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발송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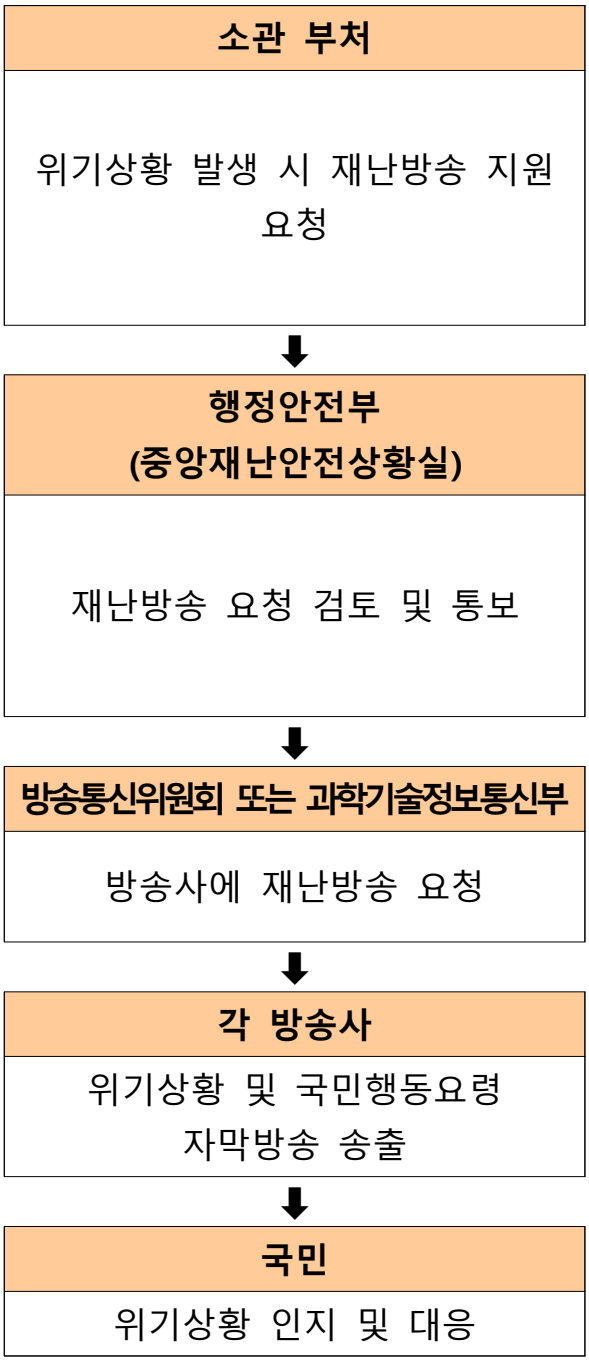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신속하게 송출

3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경보

□ 목 적

○ 민방공 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체계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전파(민방위기본법 제33조)

□ 주요기능

○ 중앙과 17개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국 경보단말(사이렌 2,220대) 울림

○ 8개 중앙방송사 및 18개 정부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활용한 상황전파

○ CBS(재난문자), DMB(지상파방송), TV자막 시스템과 연계 알림

※ 재난경보(재난경계, 재난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단말만 이용하여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실시

□ 민방위경보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재난경계정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 전달체계도

소관 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재난경보 발령 검토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 발령
  ※ 재난경보: 재난경계, 재난위험, 재난경보해제
  - 전국단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단위 재난: 시·도지사(2개 시·군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중앙 및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경보 발령 요청 및
경보전파 실시

※ 요청내용: 경보발령 사유, 경보의 종류, 울림일시, 울림지역, 경보요청자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 행정안전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경보통제소에 화상전화로 경보발령 지시
    ※ 제1경보통제소 부재시 제2경보통제소 요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 전용전화로 요청, 부득이한 경우 FAX 사용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장애 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 요청

⬇

지자체 민방위경보 단말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경보종류에 따라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 재난위험경보: 음성방송+사이렌

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 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2018.10월말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85**	36	245	17	87
사용자수	**16,157**	1,522	11,403	2,354	878

□ 시스템 개념도

□ 메시지 작성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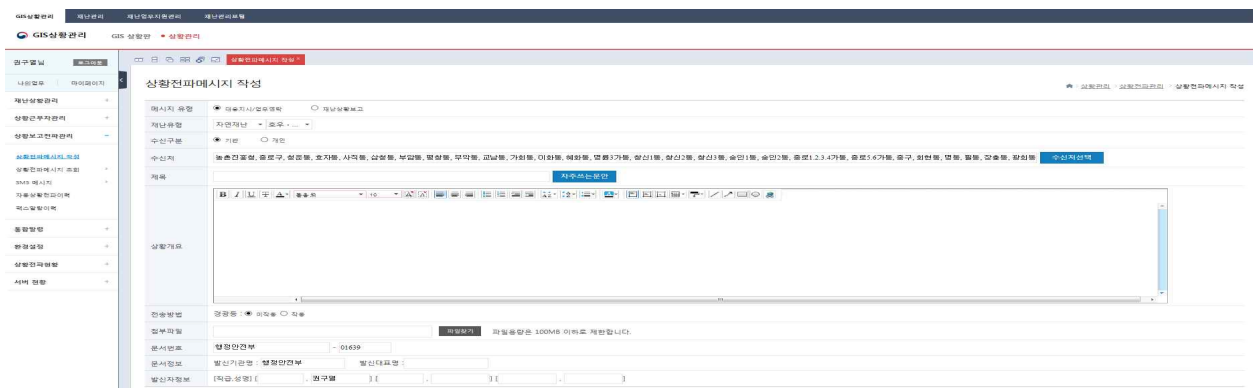

※ 경로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GIS상황관리-상황관리-상황보고전파관리-상황전파메시지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ndms.go.kr, 외부망(인터넷망)], 문의(044-205-8462)

3.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개 요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부처, 긴급구조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18부 •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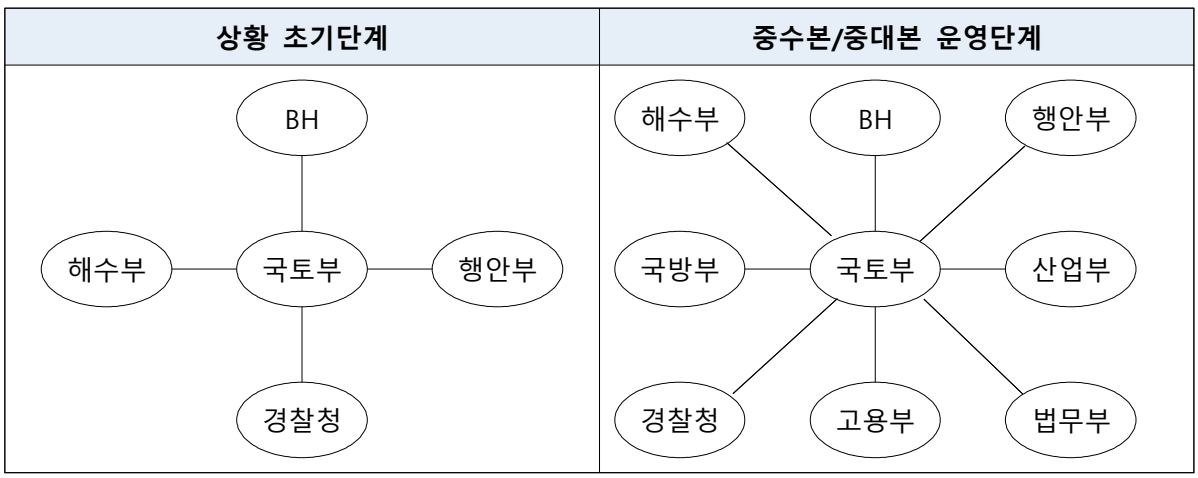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운영 절차

소관 부처

영상회의 연계 요청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

참여기관 영상회의

상황 공유 및 논의

- 회의계획 수립(참여기관 선정) 및 영상회의연계 요청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유선 연락*하여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요청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연재난팀원(044-205-1551)
- 재난발생현황, 대비태세, 협력지원체계, 대응조치 등 점검을 통한 총괄·조정

4. 위기 유형별 사례 및 관련 일지

□ 위기 유형별 사례

위 기 유 형	사 례	주요 상황
컨테이너 트럭 분야 종사자의 집단 운송 거부	o **'03.5.5~15간 전국적으로 발생** - 관련단체(화물연대)는 지역별·업체별 운송료 인상 요구와 함께 - 개별 등록제 시행과 다단계 폐지, 유류비 보조·통행료 인하 등 18개항 요구 * 정부 11개항 이행 약속	o 포항 등 주요공단 진입로 봉쇄 o 5.9 부산집회 이후로 전국 주요 도로 점거, 항만 봉쇄, 비회원 운송행위 방해 등 불법행위 확산으로 대체수송이 불가 o 수출입 화물 처리 차질로 총 5.4억불의 피해 발생
BCT(시멘트)트럭 분야 종사자의 집단 운송 거부와 컨테이너 트럭 분야 종사자들의 운송거부 동참	o **'03.8.21~9.5간 전국적으로 발생** - BCT(시멘트)분야 종사자(화물연대)들은 운송료 인상 협상 결렬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면 운송 거부 돌입 -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분야 종사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상황 악화	o 운송 거부자들의 차량 시위, 도로·항만 등 시설 점거 등은 별무 o 운송 거부자, 비화물연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협박 등 운송 방해 행위 전개 o 8.21~9.1간 수출입 화물 처리 차질로 총 6.03억불 피해 발생
컨테이너 트럭/BCT 트럭/철도 등의 연대 파업	o **연대 파업 사례 없음** ※ 연대 파업시 효과가 있는 대체 수송 수단의 제약으로 수송 분야 전반의 불편과 피해 막대 예상	o 대체 수송 수단의 제한에 따른 물류 기능 조기 마비 가능성 * 대체 수송 수단의 예 - 군 컨테이너 차량 - 임시 화물열차 - 비화물연대 차량 (전체차량의 75%수준) - 화주차량 - 자가용 트럭 - 일반 카고 트럭 등

위 기 유 형	사 례	주요 상황
화주와의 협상을 위한 사업장별 운송거부	o '06.3.28~30(광주) 운송거부 - 광주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주(삼성전자)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집단행동 돌입(3.28) - 화물연대 집행부와 (주)극동컨테이너는 합의서(안)를 작성하고, 집단운송거부 철회(3.30)	
표준요율제 법제화를 위한 운송거부	o '06.12.1~12.5 전국적으로 발생 - 표준요율제, 주선료상한제 도입을 위한 이영순 의원입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전국적인 운송거부 돌입(12.1) - 건교위 법안소위(12.5)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시 수급안정화, 운임제도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보고토록 결정함에 따라 집단운송거부 중단(12.5)	
대정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운송거부	o '07.11.16(미실행) - 표준운임제 도입,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확대, 번호판교체 절차간소화 등 대정부 요구사항 제출(11.11) - 정부-화물연대간 협의(6회)를 통해 잠정협상안 마련(11.15) - 집단행동 유보를 선언(11.16)하고 잠정협상안에 대해 수용여부 찬반투표 실시(11.16, 반대 52%로 부결)	

위 기 유 형	사 례	주요 상황
고유가에 따른 화물 운송 집단거부	o '08.6.13~6.19전국적 으로 발생 - 화물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 도입, 불법다단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사항 제출 - 운송료 현실화에 대하여는 개별사업장별로 협상하기로 하고 집단운송거부 중단선언(6.19)	o 정부- 화물연대간 간담회(11회), 물류업계간담회(6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 조율 o 정부에서는 고유가극복 민생안정대책*(6.8)과 관계장관 담화문 발표**(6.17) *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 연장('08.6월→'09.6월) 유가연동보조금(1800원/ℓ 초과분의 50%) 추가지급('08.7.1부터 1년간)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확대,LNG화물차 전환지원, 화물차 감차보상,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제도개선 추진
운수노조 조합원 자격문제에 따른 화물운송 집단운송거부	o '09.6.11~6.15 전국적으로 발생 - 화물연대가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간 사적계약 문제를 화물연대 노조인정 등 정치쟁점화하고자 시도 * 5.3(일)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타** 인근 야산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 -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간 사적 계약문제로 국한시켜 화물차주들의 호응이 저조	o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물류차질 미비 o 우리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 집단운송거부 조기 종결
운송사와의 협상을 위한 사업장별 운송거부	o '10.6.21~8.18(창원, 대산) 운송거부 - 운송료 인상, 화물연대 활동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연대 명의 협약체결을 요구하며 운송거부 돌입(6.21 창원LG공장, 6.29 대산 유화단지) - 운송사업자대표와 운송종사자 대표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운송거부 철회(8.10 대산, 8.18 창원)	o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 화물연대는 소득없이 운송거부 종결 - 화물연대 명의 협약 체결 거부, 운송사와 차주간 개별 계약관계 확인

위 기 유 형	사 례	주요 상황
운송료 인상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단운송거부	o **'12.6.25~6.29 전국적으로 발생** - 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인상, 기름값 인하 등 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운송거부 돌입 - 화물연대는 운송사와 운임인상안(9.9%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운송거부 철회(6.29)	o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 2차관) 운영, 군위탁 컨테이너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 5부 합동 담화문 발표(6.25) o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물류피해 최소화 * '12년도 피해액(2.1억$)은 '08년(6.13~6.19, 56.3억$)의 약 4% 규모 o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 집단운송거부 조기 철회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단운송거부	o **'16.10.10~10.19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생** -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차주에게 허가권부여, 지입계약의 영속성 인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대규모 집회(9.24) 이후 운송거부 돌입 -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10.10)이후 인천, 평택 등 전국에서의 산개 투쟁이후 부산신항에서 재집결(10.15)	o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차관) 운영, 군위탁 컨테이너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10.6) o 부산항을 타깃항만으로 한 운송거부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 집단운송거부 조기 철회

□ '03년도 화물운송종사자 운송거부 일지(1~2차)

구 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차 전단계	'03. 3. 31	화물연대에서 대 정부 12개 요구사항 제출	
	4. 21	대정부12개 요구안 관련 노·정 실무협의회 시작	
1차 (14일)	5. 2	화물연대 포항지부 포항지역 공장 폐쇄	
	5. 7	화물연대 부산지부 파업돌입(5.8부터) 선언	
	5. 15	노·정 협상 타결 및 파업 철회	
2차 전단계	8. 4	화물연대 20일 총파업 선언, 정부에서 파업시 조기 공권력 투입방침 발표	
	8. 8	화물연대 부산에서 운송사와 협상재개	
	8. 15	정부 화물연대 집단행동 대비 상황실 설치	
	8. 19	화물연대-운송사 민주노총서 협상 밤샘 협상 결렬, 화물연대 집단행동 유보 발표	
	8. 20	BCT(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협상 결렬	
2차 (16일)	8. 21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돌입	
	8. 23	운송사, 25일까지 선복귀 요구	
	8. 25	협상재개 시도 무산	
	8. 27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영장 발부	
	9. 1	화물연대 궐기대회, 도심 차량시위 시작	
	9. 2	도심 차량시위 등 강경투쟁 전환	
	9. 3	컨테이너 위수탁지부 업무복귀 선언	
	9. 4	화물연대 지부별 총회	
	9. 5	업무복귀 선언	

※ 피해액추산(대한무역협회) : 11억 4,300만 달러(1차 : 5억 4,000만, 2차 : 6억 300만)

5.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국교부-해수부 업무 협력 방안

Ⅰ. 추진배경

□ 화물연대는 항만, ICD(의왕, 양산) 등 주요 물류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여 대정부 협상력* 증대 도모

* 과거 10차례의 집단운송 거부 시 부산항 또는 광양항을 거점으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산항을 거점지역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 전체 컨테이너 차량 **20,457대** 중 **화물연대 가입** 차량은 **약 5,500대** 정도(약 26.8%)로 집단운송거부 시 수·출입화물 수송차질로 경제 피해 불가피

□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실효성 확보와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 그간 물류거점별 전담관(현장수송지원반)을 운영하였으나, 현장 동향 파악 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업무 지시 단순 전달 등 역할이 미비

* 대체수송차량 확보, 운송거부 참여자 불이익 방안 및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시행, 항만 내 여유 장치능력 확보 등

Ⅱ. 부처별 조치사항

□ 국토교통부

○ 지방항만청에 설치되는 육상화물운송 대책반에 구성원*으로 참여 실질적인 비상수송대책 업무 수행

- 국토교통부(5~6급), 도로공사, 철도공사, 통합물류협회 등의 유관기관 비상수송대책 업무관련자를 파견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시 핵심 거점 지역으로 삼고 있는 지방항만청의 비상수송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기타 주요 지역에는 필요시 1~2인 파견

○ **(주요업무)** 대체수송차량(군위탁 차량 및 자가용화물차량) 확보 및 운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업무, 운행제한 운행허가 업무, 철도수송 관련 업무 등 지원

□ 해양수산부

ㅇ 군위탁 컨테이너화물자동차 투입 시 책임부대장과 비상수송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상호협의서 체결

ㅇ 제한차량 운행 식별 표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차량 식별 표지 등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발급하여 대외 공신력 확보

ㅇ 주요 항만에서 발생하는 육상화물운송대책 업무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하는 비상수송위원회에서 현장 총괄관리

Ⅲ. 행정사항

ㅇ「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또는「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제·개정 시 반영

6.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 관련 업무협약서(국토부-국방부)

화물운송 종사자 집단 운송거부시 정부위탁차량 운용 관련

업 무 협 약 서

제 1조(목적) 화물운송 종사자 집단 운송거부시 정부위수탁차량(이하 "위수탁차량"이라 함) 또는 군차량 지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함) 국방부(이하"국방부"라 함)의 각 담당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업무협약은 위수탁차량의 화물운송 지원을 받는 지역에 설치한 비상수송대책위원회와 책임통제부대장이 체결하는 상호협의서의 상위 문서로서 그 적용 범위는 실제 지원되는 위수탁차량과 군 요원(운전자, 통제관 등)으로 한다.

제3조(차량배치 및 운행)①국토부와 국방부는 위수탁차량이 화물운송 종사자 집단운송거부 개시 즉시 소요지역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국토부는 위수탁차량 운행 시 업무와 지형에 익숙한 안내 요원이 위수탁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운행 안내와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③국방부는 위수탁차량 운행 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 2인이 동승하여 교대 운행토록 한다.

제4조(차량정비 및 점검)①국토부는 위수탁차량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차량 정비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위수탁차량이 적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평상시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는 정비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부는 군위탁 차량이 평상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조(운전자 교육)①국방부는 위수탁차량 지정운전자 외에 군 병력 중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부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②국토부는 화물운송종사자 운송거부 시 군요원과 해당지역에 설치한 비상수송위원회에서 배치한 안내요원에 대하여 근무행동강령(별표1)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보험가입) ① 국토부는 위수탁차량 및 군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보험이 군 지원일 이전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군 지원 운전자 상해보험
2. 군 지원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3. 조합원 폭행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4. 군 위탁 또는 군 지원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적재물배상보험

② 국토부는 제1항의 보험가입 결과를 국방부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 7조(적재화물 피해보상) ①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적재화물 보험금에서 우선 변제하며, 그 이상의 손해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운송업체 부담으로 한다.

② 화물의 하역과 적재 등에 관한 사항은 비수위에서 안내해야 하며 과적 및 과속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운송업체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제8조(비용부담) ①군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식사여건, 유류, 숙박 등 제반 비용 부담·정산 기준은 「**국토교통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4장 제1절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 비용정산 기준**에 따른다.

②국방부는 군 지원 종료 후 지원내역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군 지원 종료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기타지원)①국방부는 차량과 병력을 지원하는 동안 안전을 위하여 경찰호송 및 위험지역 경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②국토부는 군 지원 요원의 식사여건, 숙박시설 확보, 수당 지급, 근무지까지의 이동 및 숙박시설로의 복귀지원 등 각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비상수송위원회와 책임통제부대장간 상호협의서(별표2)체결 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④국토부는 해당지역 비상수송위원회와 책임통제부대장간 상호협의서 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0조(효력 및 개정) ①본 협약서는 국토부 및 국방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 기관에서 협약서 내용을 개정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개정을 한다.

②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 방 부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전력자원관리실장

○ ○ ○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리하여

교 통 물 류 실 장

○ ○ ○

별표 1

근무자 행동강령

국방부 및 국토부는 각각 근무자에게 “근무행동강령” 내용을 사전 교육·서명토록 한 후, 해당 차량과 근무지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인격모독 또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

첫째,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하기

둘째, 상호 반말 및 인격모독 절대 금지

셋째, 신호위반, 과속 및 과적 금지

넷째, 음주행위 절대 금지

다섯째, 졸음운전 사전 예방 조치

여섯째, 군인 및 안내요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나는 이상의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약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표 2

○○○ 군 컨테이너차량 지원 상호협의서 표준(안)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물류 수송지원을 위해 ○○○총괄책임통제부대인○○○ 부대(이하'군부대')와 ○○○비상수송위원회(이하"비수위")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한다.

제1조【지원장비】

투입장비는 정부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 대이다.

제2조【지원인원】

지원에 투입된 인원은 총 ○○명이며, 세부인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총원	통제관	운전자	추가지원	비고
인원(명)					

제3조 【행정지원】

① 비수위는 군 지원 인원의 숙소↔근무지 이동용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비수위는 군지원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국토부-국방부간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무 관련 행정지원을 한다.

※ 화물운송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이 원칙임

③ 비수위는 안전운행을 위해 안내요원이 차량별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비수위는 군 지원 요원의 안전을 위한 경찰호송, 위험지역경계 등을 지원한다.

⑤ 비수위는 군 지원 요원의 근무시간, 숙박 등 근무여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014. 5. .

책임통제관 ○○○ (인) **비상수송위원장** ○○○ (인)

7. 관련기관 연락처

구 분	부 서	연 락 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044-200-2241
	교통정책과	044-200-2241
법무부	검 찰 국	02-2110-3005
	공안기획과	02-2110-3282
국방부	군수관리관	02-748-5701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44-205-5000
	재난대응정책관	044-205-5217
	사회재난대응과	044-205-5250
산업통상 자 원 부	종합상황실	044-203-5581
	창의산업정책관	044-203-4351
	유통물류과	044-203-4387
고 용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44-202-7301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89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30
국 토 교통부 (주관기관)	교통물류실	044-201-3989
	물류정책관	044-201-3991
	물류산업과	044-201-4016, 4018, 4019
해 양 수산부	해운물류국	044-200-5700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0, 5753, 5754
문화체육 관광부	대변인실	044-203-2000
	홍보담당관	044-203-2000
경찰청	정 보 국	02-3150-2281
	정보3과	02-3150-1432
	경비과	02-3150-2656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연락처

구분	입주구역	업 체 명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배후단지	동측 (1단계) 김민아	㈜우인	이희준	대표이사	061-794-0642	061-794-0643	ochard@naver.com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석로 276-23
							ujeongtmr@hanmail.net	
					070-4738-3611		woointrade@hanmail.net	
		한국파렛트풀㈜	김종국	과장	010-2045-4362	02-3669-7750	dameano@logisall.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18-35(도이동)
		한국컨테이너풀㈜ 광양물류센터	이민우	과장		pury@logisall.com	pury@logisall.com	
		씨제이대한통운㈜	장동훈	사원	061-797-5166		donghun.jang@cj.net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2
			배경웅	과장	061-797-5163		kw.bae@cj.net	
					010-9305-6398			
			김평안	사원	061-797-5165	061-797-5169	peace.kim@cj.net	
		동원로엑스광양㈜	설동훈	과장	061-797-6015		hoony79@dongwon.com	
					010-4945-6033			
			김민아	사원	061-797-6000	061-797-6020	minah999@dongwon.com	
					010-2889-5282			
	동측 (2-1단계)	성화산업㈜	양수진	차장	055-970-0286	055-758-5583	sujin.yang@seonghwa.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60 (우)57772
			김혜성	과장	061-797-0610	061-797-0618	hyeseong.kim@seonghwa.co.kr	
		㈜동방광양물류센터	김영덕	팀장	061-768-2596		youngduk@dongbang.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72(도이동)
					010-3620-2763			
			정동윤	과장	061-798-2533		yapshap@dongbang.co.kr	
			최기범	사원	061-792-2251		emile@dongbang.co.kr	
					010-6277-4879			
		㈜한진	강태희	팀장	061-910-9830	061-795-0407	thkang@hanjin.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2
			김태열	차장	061-910-0350		swseo@hanjin.co.kr	
			임서연	과장	061-792-5400	061-792-1531	jnim@hanjin.co.kr	
		㈜케이씨티시 광양지점	박지홍	차장	061-791-8124	061-791-6517	parkjh@kctc.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174 (우)57772
			이경환	계장	061-791-8124		kyunghwan@kctc.co.kr	
			이민훈	사원	0661-794-3007		alsgns22@kctc.co.kr	
	동측 (2-2단계)	㈜대평	한병규	팀장	061-760-2000	061-760-2009	paratric@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4
		㈜대현우드	김정미	이사	070-4185-0585	051-831-1068	dhwoodgy@daihyunwood.co.kr	전남 광양시 항만7로 71-24(도이동)
		㈜한영이앤씨			061-469-0711	061-469-0801	ymma@hanyounginc.com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5 (우)58452
		㈜피드랜드코리아 광양G.G	송현주	사원	031-332-0707		shjadts@nate.com	전남 광양시 항만7로 21번지
			정오균	과장	010-7614-0344		samsic00@nate.com	
			최윤진		061-795-0447	031-334-0449	space@feedland.co.kr	
		㈜이이더불유케이에이치피시	송인길	부장	061-797-8621	061-795-8171	igsong@eewkhpc.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9
			김인철	과장	061-797-8618		ickim@eewkhpc.co.kr	
			김민석	사원	061-797-8632	061-795-8172	mskim@eewkhpc.co.kr	
		㈜밸런스인더스트리	태진삼	팀장	070-5213-1003	02-596-8720	tj0308@naver.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10
		㈜제일로지스	함형래	대표이사	061-792-6601~3	061-792-6604~5	cheil5548@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46 (우)57772
			조정량	팀장			jo7910@nate.com	
			장진미	대리	061-792-6601		jang781204@naver.com	

구분	입주구역	업 체 명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세방㈜	남상영	선임	061-795-6813	061-798-7410	nsy@sebang.com	
			정채운				jcw8707@sebang.com	
		세방전지㈜	이상훈	총무팀 책임	02-3451-6252			
			정재윤	주임	02-3451-6114	061-795-9369	jjy0305@gbattery.com	
			이충호	주임	02-3451-6251		batteryking@gbattery.com	
		㈜인터피드			031-8018-9000	031-8018-9099	interfeed@hanmail.net	
			문별	실장	070-5121-2522		qufdb2@naver.com	
	철송부지	㈜동화	이상일	부장	061-795-2081	061-795-2084	nixlee@sslog.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205 (도이동)
	국제물류센터	태웅물류센터㈜	염기운	대표이사			kwygwy@gmail.com	
			이충환	팀장	061-795-5125	061-795-5126	chlee@twglb.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15 (우)57771
			박지혜				carrot0926@naver.com	
		㈜동행지에이티	박재철	차장	061-795-9400	061-795-0790	jeachoul6968@nate.com jeachoul6968@donghaengcorp.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85 (도이동)
	황금물류센터	세방광양국제물류㈜	고형연	책임	061-798-7479	061-798-7470	hykooh@sebang.com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460(도이동)
			이기영	주임			sbsarang@sebang.com	
			최성기	책임			skchae@sebang.com	
	황금 사무실	㈜정진홈푸드	서지선		070-4489-0038	061-794-2025	jjfamily7227@daum.net	
		케이엘물류	박희영		061-791-2235		kllogics@daum.net	
		남양항운㈜			061-791-6626~7		ny6627@naver.com	
		광양만권시설관리㈜	길용구	대표이사	061-795-8845	061-795-8847	ygkil@naver.com	
		(유)광신화물운수사			062-267-7721	062-263-9184	jhsy0303@nate.com	
		만남통운㈜			061-793-5223	061-793-5220	meet5223@nate.com	
		㈜장원물류			061-794-0461	061-794-0464	jwjw0461@daum.net	
		㈜솔로지스틱스	권숙희	대표이사		061-761-8387	sskk0916@naver.com	
		에이치케이무역	정성욱	대표이사	010-9300-9691	061-857-1961	wjdtjddnr4321@gmail.com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75
		㈜보라트랜스	석지운	대표이사	061-795-9951	061-795-9951	office@boralogis.com	
		㈜동방	김대훈		061-798-2517			
		㈜여수광양항만관리	이현주		061-797-6710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6(도이동, 황금물류센터) (우)57772
	서측	㈜물류명가	박승규	대표이사			psg2087@nate.com	
			강승호	대표이사	061-762-4700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66
		KCJ식품유통㈜	정세철	이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1-1
			허영균	전무	053-722-2011	053-722-2030	ykh0545@visionsi.co.kr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8 2층 (우)41516
			박성욱	전무	053-722-2088	053-722-2010	kjg7643@hanmail.net	
			이동훈	과장	053-722-2015		ldh4237@visionsi.co.kr	
		(유)백운운수	이해만	상무	061-691-7011	061-691-7399	kongsu83@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67(황길동)

구분	입주구역	업 체 명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류정열	본부장				
			임용찬	팀장			winyc0218@nate.com	
			김성순				kssun4210@nate.com	
			조영찬	과장	010-8712-1919			
			주현민	대리	010-2266-2820		wjdakfaldis1@naver.com	
		금호피앤비화학㈜	김민국	대표이사	061-688-3890	070-7797-7375	tpkmk@kpb.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70 (우)57771
			모요셉	대리	061-688-3662		enjoyjs@kpb.co.kr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
			김연주			061-688-3634	kyj@kpb.co.kr	
			김서정		061-688-3685			
			김민국	협력사 대표	061-688-3890	070-7797-7375	tpkmk@kpb.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70 (우)57771
		㈜어울림	전재민	부사장	061-795-1180	070-4206-1180	unlim1210@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37(황길동) (우)57771
			박준혁	과장			qkrwnsgur5694@naver.com	
		에이치에이엠㈜	한광성	전무	061-791-0897	061-791-0898	andy-han@hamglobal.co.kr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6 2층(도이동, 황금물류센터) (우)57772
			한명실	이사			ham@hamglobal.co.kr	
			김성규	팀장				
		제이에이인터내셔날㈜	안종현	대표이사	061-792-7558~9	061-794-7555	leesa1018@naver.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174 (우)57771
			최학종	부회장	061-792-7558	061-794-7558		
			김회강		061-792-7559	061-794-7554	jaint7556@gmail.com	
			안상미	실장	061-792-7558~9	061-794-7555	jaintlogix@gmail.com	
		㈜서진로지텍	손병기	사장	061-795-0096~7	070-7610-9220	gi0882@naver.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14 (우)57771
			최정만	부사장	02-785-0861	02-785-0860	seojinlgt@seojinlgt.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9, 506(여의도동, 두일빌딩)
			정두철	대리	061-795-0096~7	070-7610-9220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14 (우)57771
		㈜현경물류	최해로	상무	062-267-7721	062-268-6910	ktt6907@hanmail.net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80 221호
			이숙연	과장	062-267-7721	062-263-9184	jhsy0303@nate.com	
		㈜광양인터내셔널물류센터	허남복	부장	010—9660-0850		hnambok@naver.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4로 20
			이혜정		061-795-3811	061-795-3820		
			이수빈	사원			sblee1@dwlogistics.co.kr	
		롯데글로벌로지스㈜	서재덕	대리	061-792-7503	061-794-7507	jaedeok.seo@lotte.net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4로 19
		㈜이에스꼬레아	이병규	전무	061-791-6036	061-791-6035	escorea@koreashipsupply.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138
			김호일	부장	052-261-6036	052-261-6035		
			윤가영	차장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267 3층 이에스꼬레아
		광양냉장㈜	양기동		061-792-8851	061-795-2007	ykd8891@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112 (우)57779
		㈜디에스아이	박성엽	대표이사	010-8838-5040	061-793-1609		전남 광양시 항만3로 20 (황길동)
			안정대	대표이사	010-2042-8757			
			정주영	과장	061-793-1610		jjy298800@daum.net	
		㈜대풍	김영일	이사	061-793-6780	061-793-6784	cowhome@daum.net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61 (황길동)
			신덕희	팀장	061-793-6782~3		epr8581@hanmail.net	
		㈜킹톱스	방영		061-792-8899		454428995@qq.com	
							kingtops0804@naver.com	

구분	입주구역	업 체 명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황종호	상무				
		㈜지성	민규혁	차장	061-794-9222~4	061-794-9220	mgh3657@naver.com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580
					061-792-3270	061-796-2234	sk3270@nate.com	
		㈜세양지엘시	박희복	차장	061-807-2809		seyang-logis@seyang.kr	
			신희애		061-807-2737		heeae1234@nate.com	
		㈜더원로지스	천재진				cjj7092@hanmail.net	
	구홍보관	씨엠푸드트레이딩	김정환	구대표이사				
			이명우	대표이사			mwlee1388@hanmail.net	
		씨엠푸드트레이딩(압류담당)	정기욱	계장	061-722-5312			
	광양시	㈜콤코	박영연	관리이사	061-795-7844~5	061-795-7846	komco7844@naver.com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52-1 (우)57772
			장소미	대리				
		㈜경덕	박상일	팀장	061-791-2806	061-794-2806	danger@eisenstar.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59
			유미연				piandseoo@eisenstar.com	
			정창민	사원			jcm0113@eisenstar.com	
		㈜케이엔시			061-794-0220	061-794-1220	asung45200@naver.com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19 (우)57772
		에스아이엔터프라이즈㈜	천재진	부장	061-795-6886	061-795-6887	cjj7092@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45
		온누리버섯영농조합법인	김형준	팀장	061-794-7235	061-794-7236	onnuriaai@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48-2
		도솔로지스㈜	오석근	대표이사	061-792-9481	061-792-9480	seok@ms-globalservice.com	
			이요한	이사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56 (우)57772
		㈜이에스바이오	강기연	대표이사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56 (우)57772
					061-795-2959	061-794-2806		
							esbio2806@naver.com	
기타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	유현숙	사무관	044-200-5755		yhs1013@korea.kr	
			가순철	주무관	044-200-5756	044-200-5769	kasc777@korea.kr	
		항만개발과	추윤식	사무관	044-200-5933	044-200-5929	cysworld00@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우)30110
	여수청	항만물류과	안인순	계장	061-650-6056	061-654-2076	insoo1004@korea.kr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이영미	계장			zeromi0430@korea.kr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해운물류팀	이영진	팀장	061-286-6830	061-286-4794	dasan3748@korea.kr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정부경		061-286-6832		blcrst@korea.kr	
			김남규	주무관	061-286-6832		arthurkim@korea.kr	
	광양시	철강항만과 제철항만팀	이현성	팀장	061-797-2428	061-797-2587	bruce113@korea.kr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광양시청 별관 5층) (우)57785
			박정규	팀장	061-797-3428			
			서승지	주무관	061-797-2861			
			박승훈	주무관	061-797-2855		seung6767@korea.kr	
		통관지원과	정혜란		061-797-8421	061-793-8491	madares@korea.kr	
			구선미		061-797-8422		koosun7@korea.kr	
	GFEZ	물류유통팀	이정한	사무관(팀장)	061-760-5630	061-760-5713	andylee@korea.kr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우)57741

구분	입주구역	업 체 명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기건	주무관	061-760-5633		dowonboss@korea.kr	
			박지영	주무관	061-760-5634		pjy0147@korea.kr	
		산단조성팀	박문수	주무관	061-760-5330	061-760-5710	dollse@korea.kr	
	KMI	항만정책연구실	김근섭	실장(연구위원)	051-797-4662	051-797-4659	gskim@kmi.re.kr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우)49111
		스마트항만연구실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YGPM	배후단지팀	양진렬	반장	061-793-8270			
	FTZ운영건물	㈜유정기업	고세걸	소장	061-792-8365	061-791-8365	basisi0229@naver.com	
	지로	㈜엘에프아이티	김아름	사원	02-2631-6200	02-853-6210	arkim@lfit.co.kr	
		테니스장						
		SGI서울보증	조백래	동광양 대표	061-793-1113	070-7827-3304	brjo21@hanmail.net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47
		SCI평가정보㈜	기종도	영업선임팀장		062-224-9545	newchosener@naver.com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6
		정부법무공단	서혜진	팀장 변호사	02-2182-0025	02-2182-0069	hjs@kgls.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서초동 1685-4) 서초한샘빌딩 (우)06600
			박지용	변호사	02-2182-0045		jyp@kgls.or.kr	
			안정은	주임	02-2182-0083		jea@kgls.or.kr	
		위성권 법률사무소	위성권	변호사	061-721-3100	061-721-3161	lawyerwi@hanmail.net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16(왕지동) 5층 (우)57932
			황용순	법무팀장				

광양항 운영관련 업체 연락처

○ 부두운영사

부두명	운영(이용)사	담당자(부서)	연락처		비 고
			전 화	FAX	
제철부두	포스코	원료공장	790-3321	790-5720	원료부두
		제품출하과 (조용희)	790-2953	790-4899	제품부두 고철부두 로로부두
		청경실	793-0714	-	관리부두
하포일반부두	세방	고형연	798-7422	798-7410	
컨테이너 부두	GWCT	성종	797-0286	797-0289	
	KIT	빅병준	798-1791	798-1785	
중흥부두	여천NCC 등 9개사	청경실	685-5250	685-5260	
낙포부두	남해화학 등 4개사	청경실	685-9446	685-5257	
석유화학 부두	YNCC 등 7개사	여수페트로	691-2961(본사) 684-5257(부두)	691-2964(본사) 684-5267(부두)	
사포1부두	SYTT(주)	오행문	686-3611	686-3210	
사포2부두	LG화학(주)	김민호	680-6413	680-6504	
LPG부두	(주)E1	정민호	690-9311	686-3227	
석탄부두	호남화력발전처	석재민	070-5000-5163	070-5000-5419	

○ 화물 및 철송장 관련

부두명	담당자(부서)	연락처		비 고
		전 화	FAX	
화물연대 컨테이너지회	노정환	061-793-5626		
철송장 씨제이대한통운	라희택 지사장	061-797-5002		
	송수종 지점장	061-797-5013		
	김평안	061-797-5165		
	장동훈	061-797-5166		

○ 해운대리점

대리점	직 위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합자)여진해운사	대표자	이상국	793-8600	793-8604	
마린스트(주)	대표자	박종인	662-8551	664-1512	
(주)반도해운	대표자	이희재	651-8902	652-6336	
광양선박(주)	대표자	이경희	798-7700	798-7788	
진양선박(주)	대표자	임채현	665-4402	664-0662	
(주)태양해운	대표자	구용재	666-2420/2	666-2423	
서보해운(주)	대표자	한상용	686-0171	692-2306	
노아선박(주)	대표자	김봉수	665-4400	665-4404	
(주)신성해운	대표자	임수환	662-4452	662-4453	
(주)창세해운	대표자	김학식	791-4095	791-4096	
해왕해운(주)	대표자	김동성	792-4477	792-4478	
남해해상(주)	대표자	김성현	643-4201	643-4205	
여수선박(주)	대표자	신현식	666-0882	665-0881	
연성해운(주)	대표자	박창수	793-2025	793-2026	
엘앤씨마리타임(주)	대표자	임채현	655-1551	655-1221	
서우해운(주)	대표자	한중환	660-8800	663-8810	
선진해운(주)	대표자	이정식	793-7982~4	793-7985	
(주)루맥스해운	대표자	박병윤	794-8765	794-8768	
태원해운(주)	대표자	최병혁	685-1307	685-1309	
은파해운(주)	대표자	이창배	794-6776	794-6775	
상지해운(주)	대표자	한용식	650-2713	650-2731	
광양에이젠시(주)	대표자	박기윤	795-3626	795-3629	
(주)대한엔지니어링	대표자	김정완	662-2888	663-3888	
효동항업(주)	대표자	서규철	665-7968	666-1494	
(주)마린글로리	대표자	조성종	686-5901	686-5900	
허브에이젠시㈜	대표자	하승민	654-9661	654-9660	
선양해운㈜	대표자	박병선	643-8824	643-8820	
두성해운(주)	대표자	서규철	692-3453	666-1494	

○ 하역업체 및 예선업체

대리점	직 위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CJ대한통운(주)	지사장	라희택	지사) 797-5040	797-5049	
	하역팀	윤진표	현장) 686-7030	688-7029	
효동항업(주)	대표자	오대명	665-7968	666-1494	
	하역팀	윤재동	665-7968	666-1494	
세방(주)	지사장	허인철	지사) 798－7301	798-7410	
	하역팀	김호명	798-7383	792-1875	
마린글로리	대표	조성종	686-5901	686-5900	
	하역팀	오동환	686-5901~2	686-5900	
동방에스엔에스(주)	대표	장수환	663-0020	663-0010	
	하역팀	노광석	663-0020	663-0010	
여수페트로(주)	대표	손기성	691-2961	691-2964	
	하역팀	김종훈	691-2965	691-2964	
(주)한진	대표	노삼덕, 유경표	792-5400	791-2172	
	하역팀	김형수	792-2172	791-2172	
		허병일	792-2172	791-2172	
광운선박	사장	황철	665-3333~5	665-3336	
광진선박	사장	이주형	662-2261~3	662-2260	
남해선박	사장	변왕섭	655-3301~3	655-3304	
대동해운	사장	백용순	793-1006	793-1107	
마성선박	사장	진영기	685-5544	685-8822	
마중예선	사장	이규용	795-9937	795-9938	
서남해운	사장	강성욱	665-7464～5	664-6065	
서호선박	사장	최태호	665-0583	655-0589	
신　　광	사장	서대원	654-9691	654-9693	
오양선박	사장	금부건	666-0100	662-4003	
우정선박	사장	장지훈	665-5633	666-5633	
일우선박	사장	김경채	662-1821	666-1460	
해도선박	사장	정태룡	655-2774～5	665-2776	

8.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주관부서 : 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지원부
□ 지원부서 :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 협업기관 : 여수·광양경찰서, 여수·광양시 등 지자체

1.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특징

○ 시각장애인

- 자신의 힘만으로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에 의한 긴급사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숙한 지역 내에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도움 없이는 평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의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혼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다).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청각장애인

- 음성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시각정보가 아닌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이 어렵다(단독

대피가 어렵다).

- 장애의 상태(전맹전농, 약시전농, 전맹난청, 약시난청)별로 정보수집 방법이 다르며, 상황판단이 어렵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지체장애인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특히, 하지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

○ 내부장애인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자력 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심장·신장·호흡기 등 기능장애로 인해 인공투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항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 항상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봄베, 가래흡입기 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 지적장애인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변화에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

○ 정신장애인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둘 이상의 지시를 받으면 혼란하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은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방금 전의 기억 또는 목적지나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궁금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우나, 매번 지시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경우나, 직접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할 수 없다.
-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신의 피로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발달장애인

-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투르므로, 불안한 상태에서 침착성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의사소통이 서투르므로,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상상하는 것이 서투르므로, 대피의 필요성이나 위험한 장소 또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촉각 등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특정 소리를 싫어하여 귀를 막고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편식하거나 특성 옷만 입거나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감각이 둔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상태 불량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 치매노인

- 시간·장소·사람을 파악하는 데 혼란하는 경우가 있다.
- 식사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최근에 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상기 증상은 환경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쉽다)

○ 임산부

-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각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한순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음성에 의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청각장애인

- 음성에 의한 대피명령 및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화·요약필기·문자·그림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시각 또는 음성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어려우므로, 점화(點話, finger braille), 촉수화(触手話, tactile signing), 지문자(指文字, fingerspelling), 손바닥에 글씨 쓰기(print-on-palm), 확대문자(large print) 등 개인별 장애상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 정보전달·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고려한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화·필담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 지체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지관리도구(공기주입, 펑크수리, 공구)도 필요하다.

○ 내부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배설기구 장착자인 경우에는 인공배설기구용 기구가 필요하다.

○ 지적장애인

-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

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 재난 발생 시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평소부터 스스로 약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기억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여 행동요령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등 본인의 증상에 맞는 유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긴급사태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 발생 시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음식·물자 배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거나 소란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대신에 줄을 서주거나 별도배급 등의 대응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

- 앞으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전달한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실물·사진·그림이나 단어 등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패닉 등을 일으킨 때에는, 기분이 진정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거나 개인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텐트나 파티션·골판지로 주위의 공간과 구별하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 청각과민인 경우에는 헤드폰 또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하는 등을 통해 진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상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없어도, 몸 상태를 대강 확인하거나 식사·수면 중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지체장애가 있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병태나 증상에 따른 대피유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만성질환자가 많고,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의료적 도움이 필

요한 경우가 있다.

○ 치매노인

- 긴급사태 등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정보전달 시의 주요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알기 쉬운 어조로 전달한다.
- 음성 정보로 여러 번 반복한다.
- 점자나 확대문자 외에,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한다.
- 문자나 그림을 조합한 필담으로 정보를 전달한다(항상 필기구를 준비해둔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 수화통역자 및 요약필기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게시판·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소에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점화), 수화(촉수화), 지문자, 필담, 손바닥에 글씨 쓰기, 음성 등이며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의사소통한다.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지적장애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한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행동요령, 중요한 설명·예정은 메모로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말을 할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선택지를 주거나 그림·지도를 활용하는 등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하여, 초조해하는 때에는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메모를 붙여놓거나, 반복하여 설명한다.

○ 발달장애인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물이나 사진, 그림, 단어 등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 미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전달한다.
- 큰 목소리를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것을 확실히 전달한다. 「×」 등의 표지나 마크를 사용하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치매노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천천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대피유도 시 주요 고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둔다.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확보한다.
-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지지도(認知地圖)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배려한다.

○ 청각장애인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 결정해둔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지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언어장애자(실어증 등)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지체장애인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내부장애인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한다.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지적장애인

-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한다.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장애인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피해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 행동요령이나 중요한 설명・예정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더라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 길이나 건물 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지까지 동반하는 등 필요한 유도를 행한다.
- 부상을 입었으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주된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상황 등 주변에서 청취하는 등 잘 확인한다.

○ 발달장애인

- 사전에 대피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행선지, 이동 소요시간, 동행하는 사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일어날 일(할 일, 갈 곳 등)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대화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킨다.

○ 치매노인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유의하며 지원한다.

○ 임산부

- 행동 능력은 떨어지나,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 대피 중의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피유도가 필요하다.

- (대피소에서의 유의점)

  · 의료보험 서비스의 제공이나 심리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 충분한 영양(영양식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실의 온도를 조정(신체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 체계

□ 구축 개요

○ **(목적)** 주관기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인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 국 대사관에 토옵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내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통보내용

○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통보절차 및 역할

○ 재난관리주관기관

- (○○○○과) 소관 재난에 의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및 전달

*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공유(재난안전법제18조제5항)

- (△△△△과) 각 국 대사관에 피해현황 통보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그 정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국 대사관과 외국인 피해현황 공유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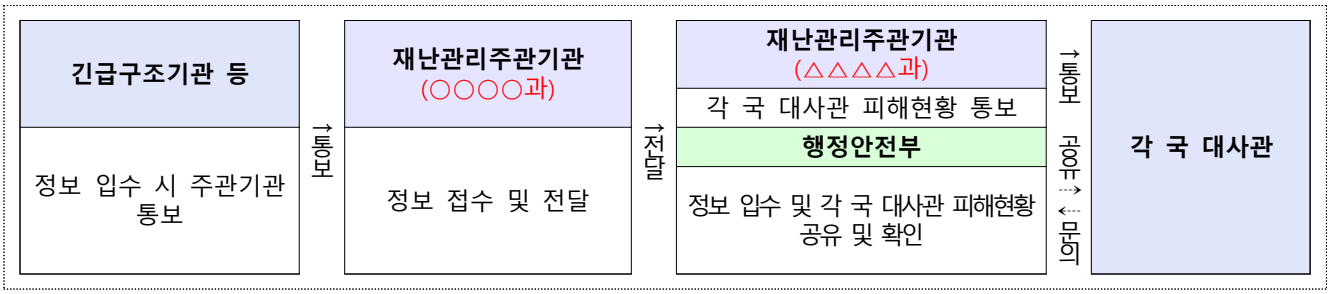

○ **(외교부)** 주한 공관 비상연락망 정보 제공 * 반기별 업데이트 실시

○ **(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존재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해당 피해자 인적정보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대형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비상연락망 통해 해당 외국인 국적 주한 공관에 피해 현황 통보

- (1차) 현황 유선통보 (2차) **사망자** 존재시 상세정보 공문/팩스로 전달

* 경찰은 일선 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법정양식에 따라 재외공관에 공문·팩스 통보(1차), 다만, 해경의 경우는 일선 서(1차) 뿐만 아니라 본부 국제과에서 추가 팩스·유선통보(2차)

【 수 습 사 례 】

▸ '18.2.28. 어선 전복사고로 인도네시아 사망자(선원) 인적정보 제공, 영사관 통보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부산출장소)에서 시신인계(3.2), 항공편으로 본국 인도(3.4)

□ 사건 통보 예시 (해경)

○ ○ 해 양 경 찰 서

(○○○○ Korea Coast Guard)
전화(Telephone) : 000
팩스(Fax) : 000

수 신(To) : 베트남 대사관

제 목(Subject) : **사고사실 통보(Accident Notification)**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 명(Name) : 000

생년월일(Date of Birth) : 0000.00.00생

여권번호(Passport No.) : 0000

국적(Nationality) : 베트남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일시 : 2000.00.00. 00:00경

발생장소 : 00-00.00N 000-00.00E(○○○도 남방 00 해리)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2000. 00. 00. 00:00경 00-00.00N 000-00.00E(○○○도 0 해리)에서 어선 203현진호가 전복된 것을 인근을 항행하던 어선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임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 제203현진호 승선원 8명 중 6명 구조(1명 사망/5명 생존)
- 제203현진호 선원인 위 대상자는 제주 한라병원 후송, 저체온증 외 건강상태 양호함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경위 **000**

소관 부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연락처	전화) 061-797-4480 팩스) 061-797-449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